

월간
재정포럼

2020. January_Vol.283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1

권두칼럼

2020년의 경제환경에서 조세·재정정책 | 김유찬

현안분석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 김우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 허경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2020년의 경제환경에서 조세·재정정책 | 김유찬 02

현안분석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 김우현 06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 허경선 28

공공정책포럼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5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외 64



2020년의 경제환경에서 조세·재정정책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020년의 경제환경과 저금리기조에서의 재정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작년보다는 약간 상승한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은 2.94%로 보고 있다. 2020년의 국제무역환경은 2019년에 비하여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2019년을 지배한 저금리 기조의 거시경제 환경은 2020년에도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독일 등에서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려간 국제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고 이 역할은 온전히 재정정책이 감내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원하고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유럽재정위기를 분석한 논문들에서는 이력효과(履歷效果)에 주목하는데 이 이력효과는 단기적으로 낮은 성장을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높은 정부부채의 우려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성장률 하락을 막지 않은 결과, 경기가 좋아질 때 성장이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추세선의 레벨이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는 것인데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성장률 하락을 막았으면 경기회복 시에 출발지점이 높은 지점에서 같은 기울기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경기부양, 특히 인적자원의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저금리 기조하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금리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소 달라야 한다.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지출비용이 금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GDP나 정부 총지출에 대비해도 당연히 낮은 비율일 것이다. 재정적자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 일정하다면 재정지출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진다.

확장적 재정정책,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에서 전년 대비 상당 수준의 증가폭을 가지는 재정확장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SOC, R&D,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과 일자리 지원(일자리를 오래 유지하려는 노력 포함) 등의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재정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중요한지, 장기성장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이력효과에 따르면 경기부양도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그 구별이 명확할 수는 없다. SOC 투자도, R&D 정부투자도 긍정적인 고용 및 성장 효과가 있다. 교육 투자와 사회서비스 강화, 공적이전지출 및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소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재정지출승수에 대하여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를 뿐 아니라 지출 분야별 효과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다르다. 대체로 정부투자의 재정지출승수가 정부의 이전지출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즉 SOC나 R&D 지출의 효과성을 옹호하는 분석들이 많지만 이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그동안의 비판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GDP 대비 R&D 지출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R&D 인력에 비하여 과다한 지출은 낭비적으로

.....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중요한지, 장기성장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
**거시재정정책의 효과는
미시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분배의 공정성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호르게 될 소지가 높다. 또 SOC 투자와 연계된 건설 경기를 그동안 우리는 단기적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이용해 왔고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또한 정부재정의 지출승수 계산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는 분석이 어느 시점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인지,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가 현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출승수의 계산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투자)지출을 구축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석모형에 반영된 탓인데, 현 시점의 상황은 구축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낮게 계산된 많은 재정지출승수의 분석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미시적 조세정책의 역할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특정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수요를 창출하며 거시적인 정책수단으로 작동한다. 거시재정정책의 효과는 그러나 미시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분배의 공정성뿐 아니라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자산과 소득이 특정 계층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와 재정의 미약한 분배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분배효과의 제고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개인들이 잠재워 두고 있는 재원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도 크다. 그리고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을 어떤 수준으로 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또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대한 통로로서의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한 측면이 있다. 



| 현안분석 |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¹⁾

I. 서론

정보 비대칭은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난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장애요인이다. 각종 질병에 대한 인류의 지식은 불완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 공급자(의사)도 종종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환자를 대리하여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제3의 지불인(third-party payer)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정부 등 제3의 지불인은 의료 공급자가 진료실 내에서 관찰하는 환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오직 의료 공급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불인에게 제시하는 청구자료(claims data)를 통해 질병 진단 결과 및 선택된 진료·처방 행위 등 제한적인 정보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보건의료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보건의료재정 운용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 및 제한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성한 관계(sacred relationship, Real et al. 2009)”로 묘사되는 의사-환자의 관계에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의료비 및 일인당 총의료비 등 집계 통계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의료 지출 추이를 관찰하며, 기관별 사망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 일부 지표를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해 의학 지침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도 한다.²⁾

의료 서비스 전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사회에 받아들여져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kim@kipf.re.kr)

1) 본고는 2019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과제 『국민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 중 V장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재정포럼』의 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2) 2017년에 시작된 미국의 의료 보상체계인 Quality Payment Program은 2019년 기준 250개의 의료 품질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https://qpp.cms.gov>, 검색일자: 2019. 9. 20.).

해 공단·심평원과 의료 공급자 간 의료 전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게 높은 특정 의료 서비스 이용³⁾에 대해 공단 및 심평원은 이를 개선해야 할 의료 이용 행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단 및 심평원이 관찰할 수 없는 임상적인 요인으로 인한 합리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연구자 혹은 관련 기관들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본고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처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의료 전달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생성의 한계와 더불어, 회귀분석을 통한 간단한 자료 처리가 한계점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질환은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분류되는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편도염, 급성 후두염, 급성 후두개염 등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의 발병 원인은 바이러스 혹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것인데, 질환에 따라 바이러스·세균 원인 발병의 분포가 상이하다. 치료를 위한 항생제 처방은 세균감염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성을 가속화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예를 들어, 부비동염은 98%가 바이러스성으로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두염의 경우 성인의 약 5~10%, 소아의 약 15~36%가 세균감염에 의한 것일 수 있다(김신우, 2016). 후두개염은 세균성 감염인 경우가 많다(김신우, 2016). 이처럼 질환에 따라 항생제 처방을 요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이를 임상적으로 감별해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임상적인 상황이다.⁴⁾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평가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지표 구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회귀모형 및 분석자료인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2.0DB를 통한 자료 처리 과정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의료기관별 고정효과의 추정치를 활용한 의료기관의 처방 경향을 기존 평가지표와 대비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처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의료 전달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생성의 한계와 더불어, 회귀분석을 통한 간단한 자료 처리가 한계점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3)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 결과를 검토해볼 수 있다(Ahn et al., 2014, 정재훈, 2014).

4) 따라서, 초기에는 항생제 처방을 자제하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 항생제를 처방하자는 지연처방전략(delayed antibiotic prescription strategy; de la Poza Abad et al., 2016)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 공급자가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의약품 지출 변동 규모의
 가격 및 이용량 변동
 분해를 통해 대부분의
 약제비 지출 증가가 의약품
 이용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II. 약제비 지출 추이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의약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에 없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매개체이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으로 의약품의 소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비 지출 규모는 2002년 4.8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9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a; 2015b; 2019),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약제비 지출 규모와 상대 비교해보면 한국은 1.71%로 OECD 평균인 1.41%를 넘어서고 있다(OECD, 2019).

의약품 지출은 의약품의 가격(P)과 이용량(Q)에 의해 결정되므로, 약제비 지출의 변화는 가격 변동 요인과 이용량 변동 요인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의약품 지출 변동 규모의 가격 및 이용량 변동 분해를 통해 대부분의 약제비 지출 증가가 의약품 이용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최윤정·Shalowitz(2011)는 2002~2006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의약품의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이 7.3~16.7%이지만, 동 기간 의약품 가격 변동은 -1.7~0.5% 내외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이용량의 변화가 8.8~16.8%에 이르러 의약품 이용량의 변화가 약제비 지출 변화의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박미혜 외(2017) 또한 2014~2016년 월별 약제비 자료를 요인 분해하여 투약일수 및 투약강도 등 사용량 관련 요인의 변화가 주요하게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표 1> 참조).

<표 1> 약품비 변동요인 분해

(단위: %)

구분	변동률		기여율	
	2014~2015	2015~2016	2014~2015	2015~2016
신규약	1.3	2.9	26.9	28.6
유지약	4.6	8.1	97.1	79.0
- 가격요인	-2.1	-2.6	-44.1	-25.7
- 사용량요인	6.9	10.7	146.9	103.5
- 교차요인	-0.3	0.1	-5.8	1.3
퇴장약	-1.1	-0.8	-24.0	-7.7
합계	4.7	10.3	100	100

출처: 박미혜 외(2017), p.51, <표 16>

한국의 경우 의약품의 가격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여력이 있는 반면,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보상체계하에서 의약품 소비량에 대한 정부의 통제수단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서론에서의 서술처럼 정부가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위해 활용할 정보량 취합에 있어 절대 열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약품 이용량의 추이를 관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의약품의 가격은 제도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여력이 있는 반면,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보상체계하에서 의약품 소비량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2>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도 추진 경과

연도	내용
200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2002	처방건당 약품목수 추가(전체 상병, 호흡기계, 근골격계)
2006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공개,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지표 추가
2007	처방건당 약품목수 공개,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지표 추가
2011	평가 결과 하위기관 심사연계 실시(지표연동관리제 도입)
2014	의원급 가감지급사업 최초 시행(2013년 하반기 대상)
2015	항생제 처방률 및 약품목수 공개항목 확대(2014년 하반기 대상)
2016	평가 결과 공개 주기 변경(반기→연간)
2017	급성 상기도 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평가지표 및 호흡기계 질환 별 상병비중 모니터링 지표 신설
2018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p.1 추진 경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2001년 약제비의 적정한 지출을 위한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환류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처방률이 높지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제비교 시 두드러지는 이용량을 보이는 처방 경향에 대해 처방률 등 집계 정보를 수집하고(2001년), 해당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2007년), 결과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를 가감하는 등(2014년)의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해왔다.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시작된 평가 대상 질환 또한 소화기관 관련 질병, 호흡기계 질환, 급성 하기도 감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2001년 약제비의 적정한 지출을 위해 도입된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항목 및 지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항목 및 지표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그동안 처방률 및 약품비, 약품목수 등 심평원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를 집계하여 평가항목으로 활용했다(<표 3> 참조). 평가지표로 분류되는 지표들은 요양기관별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들은 연령별, 다빈도 상병별, 주요 진료과목별 평균과 해당 기관의 지표 결과를 비교한 정보를 집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처방 행태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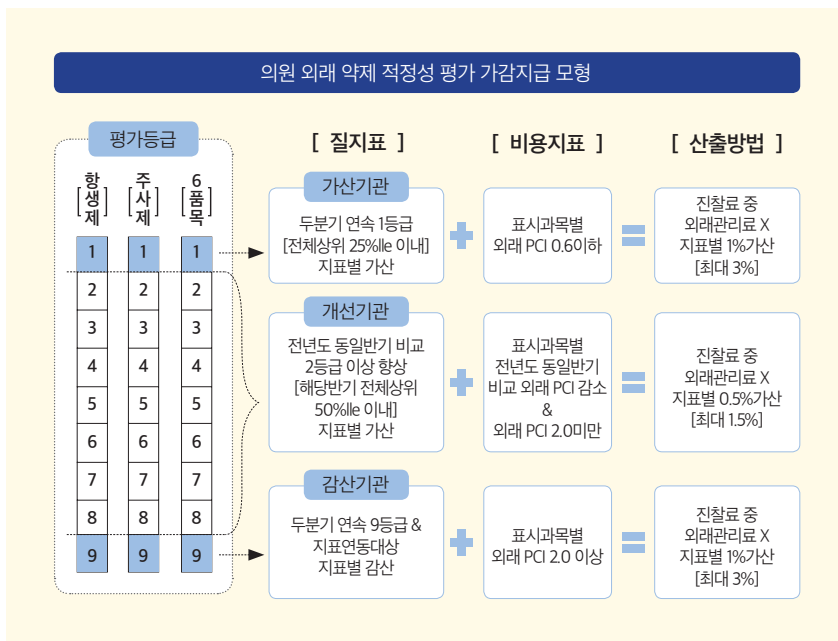
<표 3> 2019년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 항목 및 지표

구분	항목	지표	산출식
평가지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항생제 처방률	$\frac{\text{항생제 총처방횟수}}{\text{총내원일수}} \times 100$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세파3세대 이상, 퀴놀론계, 마크로라이드계)	$\frac{\text{광범위항생제 총처방건수}}{\text{항생제 총처방건수}} \times 100$
	주사제	주사제 처방률	$\frac{\text{주사제 총처방횟수}}{\text{총내원횟수}} \times 100$
	약품목수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frac{\text{원외처방 총약품목수}}{\text{총원외처방건수}} \times 100$
		6품목 이상 처방비율	$\frac{\text{6품목 이상 처방건수}}{\text{총원외처방건수}} \times 100$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frac{\text{소화기관용약 처방건수}}{\text{총원외처방건수}} \times 100$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frac{\text{총약품비}}{\text{총투약일수}} \times 100$
모니터링 지표	질환별 항생제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	$\frac{\text{질환별 항생제 총처방횟수}}{\text{질환별 총내원횟수}} \times 100$
		전체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그 외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	
	상병비중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frac{\text{호흡기계 질환별 명세서 건수}}{\text{전체 호흡기계 질환 명세서 건수}} \times 1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p.4

2014년부터 평가지표는 질지표와 비용지표로 나뉘어 [그림 1]의 모형을 통해 외래관리료의 최대 ±3%의 규모로 가감지급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8년 상반기 진료분부터는 가감률을 최대 ±5%까지 확대하고, 지표 결과에 따른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전년도 평가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한 사전적인 목표치 대비 성취 정도를 측정하여 가감산에 반영하는 절대평가의 형태로 제도 변화가 있었다.⁵⁾

[그림 1] 의원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



출처: 김지애 외(2017), p.29, [그림 9]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를 활용한 평가 과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평가지표인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을 예로 들면, 항생제 처방은 상기도 감염질환의 종류, 환자의 기본 정보 등 모두가 공유하고 관찰되는 정보뿐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이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의 항생제 처방률은 다양한 이질적인 요인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처방 행위만을 집계한 정보로 이에 기반한 평가 과정은 의료 공급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평가 정보 공개 및 이에 연계한 가감지급사업의 시행은 “중증 환자를 많이 보면 감산, 경증환자만 보면 가산”⁶⁾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을 예로 들면,
항생제 처방은 상기도
감염질환의 종류,
환자의 기본 정보 등
모두가 공유하고 관찰되는
정보뿐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이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가감지급사업 개선 제안」, 보도자료, 2018. 4. 25.
6) 메디컬타임즈(2019. 7. 3.),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감산 큰폭 늘자 의원들 발끈」, 2019. 7. 3.,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449>), 검색일자: 2019. 9. 21.

심평원이 관찰할 수 있는 환자의 성별, 연령, 상병, 초진/재진 여부, 계절적 요인 등의 기초 정보는 항생제 처방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지만, 항생제 처방 행태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지니는 정보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정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김지애 외(2017)는 이전의 가감지급사업 모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 기존 상대평가 대신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통한 절대평가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센티브 규모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기존 9등급 상대평가를 통해 진행되던 가감사업은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과거 연도 평가지표 결과 분포의 분위수를 활용한 사전 설정 성취목표치·성취기준치 대비 각 기관의 성취도와 향상도를 통해 의료비를 가감하는 형태로 변화한다.^{7,8)} 하지만, 평가지표가 전체 방문 대비 항생제 처방률 등 단순한 지표로 설계되어 있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요양기관별로 진료하는 환자 상태 등 다양한 이질적 요인에 의해 항생제 처방률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III. 회귀모형 및 자료 소개

앞선 상기도 감염의 예를 통해 일반적인 회귀분석 모형이 지표 구성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가 직면하는 정보의 비대칭은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선택적으로 심평원이 확보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정보를 간단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체 진료 횟수 대비 항생제 처방의 횟수로 정의되는 현행 지표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이 관찰할 수 있는 환자의 성별, 연령, 상병, 초진/재진 여부, 계절적 요인 등의 기초 정보는 항생제 처방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지만, 항생제 처방 행태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두염을 일으키는 화농성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pyogenes*)의 경우, 성인(5~10%)보다 소아(15~36%)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신우, 2016). 한편, 어광수 외(2000)는 급성 상기도 감염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15세 미만의 소아이거나, 재진인 경우 항생제를 처방할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또한 최원정(2013)은 2011년 환자표본자료를 활용하여, 환자의 성별, 연

7) 또한,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은 감산반도록 설계되었다.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가감지급사업 개선 제안」, 보도자료, 2018. 4. 25.

령, 주상병, 의료급여 여부, 계절, 초진/재진 여부가 항생제의 처방과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기초정보 중 일부가 항생제 처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비록 항생제 처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임상 요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일반 동료(peer) 의사들이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항생제 처방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찰 가능 정보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각 의료기관 고유의 항생제 처방 경향을 보다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청구자료를 통해 항생제 처방 여부를 이항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요양기관별 더미변수 및 앞선 환자 관련 주요 변수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선형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추정해보자.

$$T_{i,j,s,t} = X_{i,t}\beta + \theta_{j,t} + \lambda_t + \delta_s + \epsilon_{i,j,t} \quad (\text{식 1})$$

환자 i 가 의료기관 j 에서 t 연도 s 의 계절에 상기도 감염으로 진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는지 여부($T_{i,j,s,t}$)를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X_{i,t}$ 에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초진/재진 여부, 주상병(J00~J06)⁹⁾ 의료급여 수급 여부의 정보를 포함했다. 기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항생제 처방의 추이 변화는 연도별 더미변수(λ_t)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계절 더미변수(δ_s)로 통제한다.

간단한 (식 1)의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상기도 감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항생제를 처방해왔는지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주요 환자 특성 요인들이 통제되면 연도별·의료기관별 더미변수($\theta_{j,t}$)를 추정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의 처방 경향 및 연도별 변화를 식별할 수 있다. 즉, 항생제 처방 행태에 미치는 관찰 가능한 환자 요인들을 통제한 후 의료기관 고유의 처방 경향을 식별해내는 의미가 있으며, 연도별·의료기관별 고정효과 추정 결과는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로서 의미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찰 가능 정보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각 의료기관 고유의
항생제 처방 경향을 보다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에 따라 J00~J06을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구분했다(J00: 급성 비인두염, J01: 급성 부비동염, J02: 급성 인두염, J03: 급성 편도염, J04: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05: 급성 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 J06: 다발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재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재방문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증세가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한계는 명확하다. 일부 관찰 가능한 환자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므로 관찰 불가능한 기타 요인 효과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회귀모형으로 표현하자면 추정하고자 하는 연도별·의료기관별 고정효과($\theta_{j,t}$)는 Δ 관찰 가능하지 않지만 의료기관 간 진찰하는 환자군의 차이(case-mix)를 통해 의학적 근거 있는 항생제 처방률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alpha_{j,t}$)과 Δ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의료기관 고유의 항생제 처방 경향($\tau_{j,t}$)이 혼합된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theta_{j,t} = \alpha_{j,t} + \tau_{j,t}$). 이상적으로 강건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근거가 미비한 의료기관별 처방 경향 $\tau_{j,t}$ 를 식별·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한 선형회귀 모형 추정을 통해서 $\theta_{j,t}$ 를 구성하는 두 요인을 분리하여 식별할 방법이 없다.¹⁰⁾

그러나 통제변수 중 일부 정보가 이와 같은 환자군의 구성에 대한 정보를 보완 전하게나마 통제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재방문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증세가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것은 그만큼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몇몇 환자 관련 변수의 통제로 $\alpha_{j,t}$ 에 속한 정보량이 그만큼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별 단순 처방률에 근거한 평가보다는 위의 정보를 활용한 방법이 보다 우수한 식별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추정된 $\theta_{j,t}$ 는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적정성 상대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가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요양기관별 환자구성군의 격차를 일부 보정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본코호트 20DB를 활용했다. 2002~2015년의 장기간 동안 전 국민의 약 2%를 표본 추출한 패널 청구자료로 해당 환자 및 진료기관의 기초정보와 함께 질병 진단, 치료 내역 및 의료비 지출 수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급성 상기도 감염(J00-J06)으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은 모든 환자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급성 상기도 감염 외 다른 동반상병으로 인해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자료의 주상병 및 부상병에 J00-J06코드 외 상병이 기록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¹¹⁾ 항생제 처방 여부는 처방전 교부 상세내역 자료(60T)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일반명코드(성분명코드)를 기반으로 식별했다. 항생제를 나타내는 ATC코

10) 일부 임상적 상황에서 치료 결과 등 다른 종속변수를 추가 활용하여 두 요인을 분리·식별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폐색전증 환자에 대한 CT 이용 행태를 분석한 Abaluck et al.(2016)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상기도 감염 치료 목적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의 연구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11) 즉, 의료기관에 오직 급성 상기도 감염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드는 J01을 사용했으며, ATC코드에 연결되는 일반명코드 확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코드매핑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작업을 통해 활용한 항생제 성분은 모두 388종이다.

(식 1)의 $\theta_{j,t}$ 를 강건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해당 의료기관별로 적절한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도별로 급성 상기도 감염환자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불균형패널자료가 구축되었다. 추정해야 하는 (연도-의료기관) 더미변수 $\theta_{j,t}$ 의 총숫자는 10,497개이며, 다수의 고정효과를 빠른 속도로 추정할 수 있는 Stata의 reghdfe 명령어를 사용했다(Correia, 2017).

IV. 분석 결과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비중은 [그림 2]과 같다. 분석 기간 초반부터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 경향과 동일하다. 하지만, 2016년대에 40%대를 유지하며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심평원의 발표 자료와 달리,¹²⁾ 표본코호트 DB자료상으로는 2005년과 2010년경 두 차례의 급격한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과 더불어 2010년 이후로는 10%대의 항생제 처방률 경향이 관찰된다. 필자는 자료에서 나타난 급격한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급성 상기도 감염만을 분석 대상 질환으로 선정한 자료 추출 방식과 더불어, 요양기관 기준의 표본자료가 아닌 환자 기준의 표본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¹³⁾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비중은 [그림 2]와 같다. 분석기간 초반부터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생제 처방률의 하락 경향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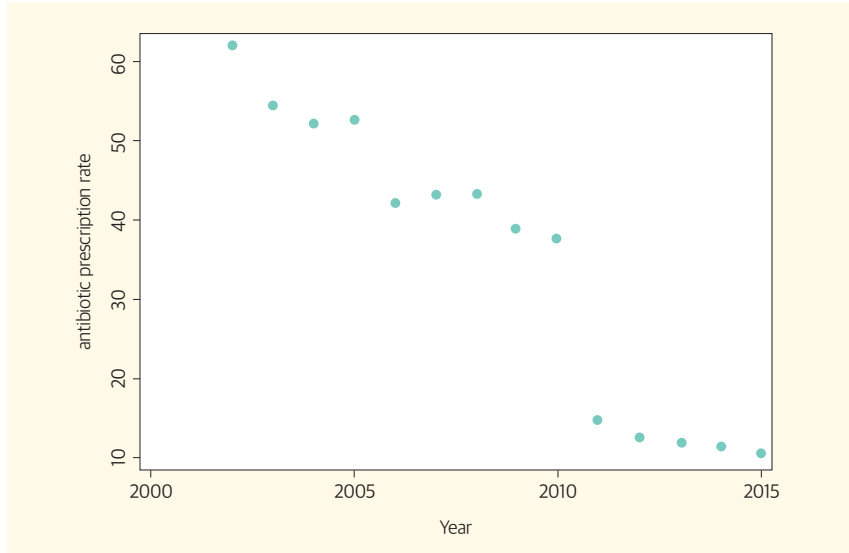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가감지급사업 개선 제안」 보도자료, 2018. 4. 25.

13) 추후 급성 상기도 감염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수자료를 통해 동일한 분석을 진행할 경우, 항생제 처방률 추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02년에는 80% 이상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이는 의료기관이 많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처방률이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2010년경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좌경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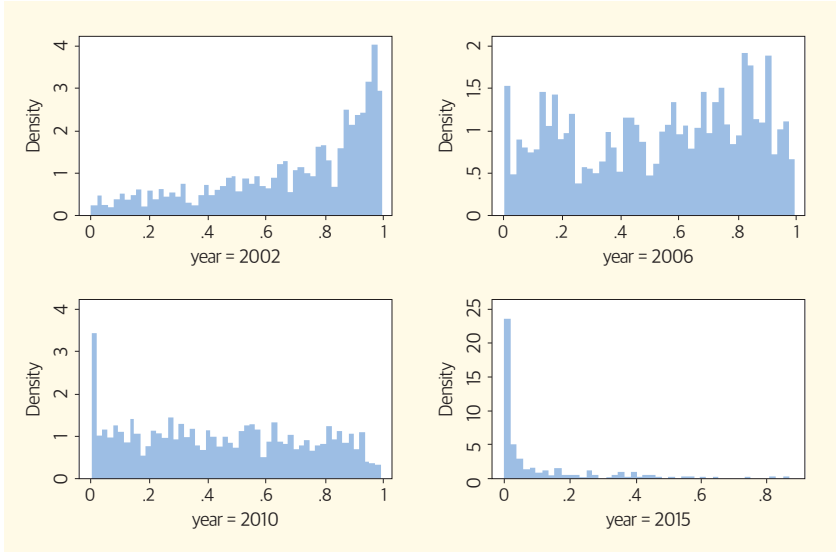


주: 상병정보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J00~J06)코드만 기록되어 있는 청구 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해당 연도에 100건 미만의 급성 상기도 감염 진료건수가 있는 요양기관은 제외했음
출처: 건강보험공단 제공의 표본코호트2.0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의료기관별로 매년 처방률을 계산하여¹⁴⁾ 시간 흐름에 따른 처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료 분석기간 동안의 두드러진 처방 행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시작 연도인 2002년에는 80% 이상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이는 의료기관이 많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처방률이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2010년경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좌경분포(right-skewed)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참조). 급성 상기도 감염 상병별로 분포를 확인해도 대부분 분석기간에 따라 동일한 행태 변화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자료 및 분석 방식의 요인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인식 개선, 2006년 항생제 처방률 공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등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하에서 시행된 행태 정보의 집계 및 정보 제공, 현지조사, 가감사업 등 일련의 정책준거가 처방 행태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시행의 인과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14)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에 100건 이상의 급성 상기도 감염 진료건수가 존재하는 의료기관만 계산에 포함했다.

[그림 3] 급성 상기도 감염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 분포(2002, 2006, 2010, 2015년)



출처: 건강보험공단 제공의 표본코호트2.0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에는 주요 환자 변수 및 의료기관 변수별로 나타나는 항생제 처방 경향을 정리했다. 먼저 환자 특성의 경우 환자가 고령일 때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적인 특성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분류되는 세부 상병별로 항생제 처방률의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바이러스성으로 분류되는 급성 비인두염(감기, J00)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10.78%로 낮지만, 부비동염이나 편도염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80%대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재진에 비해 초진일 때 항생제 처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향성은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이 통제되는 경우 달라짐을 확인했다.

한편 회귀모형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을 기준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검토하면 상급종합병원의 낮은 처방률과 의원의 높은 처방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사업의 주 정책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전문 과목 기준으로 이비인후과의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 특성의 경우 환자가 고령일 때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적인 특성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분류되는 세부 상병별로 항생제 처방률의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의 특성을 기준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검토하면 상급종합병원의 낮은 처방률과 의원의 높은 처방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사업의 주 정책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항생제 처방에 대한 요약 통계(2002~2015년)

(단위: 건, %)

구분	항생제 처방건수	진료건수	처방률
환자 특성			
연령			
0~9세	439,936	1,019,807	43.14
10~19세	112,533	206,385	54.53
20~29세	54,009	98,569	54.79
30~39세	98,324	180,557	54.46
40~49세	61,766	122,423	50.45
50~59세	36,382	81,192	44.81
60~69세	21,854	53,760	40.65
70세 이상	10,437	32,112	32.50
성별			
남성	389,359	838,254	46.45
여성	445,882	956,551	46.61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821,335	1,763,321	46.58
의료급여	13,906	31,484	44.17
임상 특성			
초진/재진			
초진	482,968	980,829	49.24
재진	352,273	813,976	43.28
주상병			
급성 비인두염(J00)	33,982	315,374	10.78
급성 부비동염(J01)	202,899	231,308	87.72
급성 인두염(J02)	143,970	351,374	40.97
급성 편도염(J03)	251,179	313,730	80.0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	75,801	129,896	58.36
급성 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J05)	2,220	4,262	52.09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125,190	448,861	27.89
진료 계절			
봄	206,701	446,079	46.34
여름	220,317	455,2325	48.40
가을	165,336	368,388	44.88
겨울	242,887	525,103	46.26
의료기관 특성			
종별 구분			
상급종합병원	687	4,342	15.82

<표 4>의 계속

종합병원	8,159	27,074	30.14
일반병원	12,888	48,966	26.32
의원	813,306	1,713,550	47.46
기타	201	873	23.02
의료기관 과목			
일반의	93,982	248,305	37.85
내과	64,891	159,036	40.80
소아과	271,306	743,727	36.48
이비인후과	359,066	529,391	67.83
가정의학과	8,928	23,190	38.50
기타	37,068	91,156	40.66

주: 2002~2015년 동안 급성 상기도 감염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한 의료기관의 1년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만 자료분석에 포함했음

출처: 건강보험공단 제공의 표본코호트2.0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식 1)의 선형확률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준 상병인 급성 비인두염(감기)에 대비하여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후두개염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확률로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인 최원정(2013)과도 일치하는 연구 결과인데, 최원정(2013)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해서 계수의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상병별 상관관계의 상대적 크기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순서인 ‘급성 부비동염 > 급성 편도염 > 급성 폐쇄 선후두염 및 후두개염 >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 급성 인두염 >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여성 환자가 다소 낮게 항생제 처방을 받고, 40세 이상 연령의 환자군에서 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 확률이 점차 낮아지며, 봄과 여름에 항생제 처방 확률이 미미하게 높아지는 점을 확인했다. 관심 변수였던 재진 여부의 경우, 재진이 초진에 비해 약 2%의 항생제 처방률 상승 상관관계가 있었다.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정형화되지 않는 의료 이용 행태로 초진 및 재진 방문의 일관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치를 통해, 초진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재진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지연처방 전략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했다.

기준 상병인 급성비인두염(감기)에 대비하여 부비동염,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후두개염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확률로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진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재진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지연처방전략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했다.

<표 5> 항생제 처방 여부 회귀분석 결과

구분	항생제 처방 여부	유의도
성별(기준: 남성)		
여성	-0.0063	***
	(0.0005)	
연령(기준: 0~9세)		
10~19세	0.0068	***
	(0.0009)	
20~29세	0.0051	***
	(0.0013)	
30~39세	0.0072	***
	(0.0010)	
40~49세	-0.0063	***
	(0.0012)	
50~59세	-0.0233	***
	(0.0014)	
60~69세	-0.0568	***
	(0.0016)	
70세 이상	-0.0914	***
	(0.0021)	
보험가입형태(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0.0007	
	(0.0020)	
주상병코드(기준: 급성 비인두염J00)		
급성 부비동염J01	0.6521	***
	(0.0012)	
급성 인두염J02	0.3174	***
	(0.0011)	
급성 편도염J03	0.6289	***
	(0.0011)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	0.3887	***
	(0.0015)	
급성 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J05	0.4385	***
	(0.0054)	

<표 5>의 계속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0.1671	***
	(0.0011)	
초진/재진 여부(기준: 초진)		
재진	0.0207	***
	(0.0006)	
계절(기준: 봄)		
여름	0.0020	**
	(0.0007)	
가을	-0.0159	***
	(0.0008)	
겨울	-0.0119	***
	(0.0007)	
표본 수	1,794,805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출처: 저자 작성

이제 기존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 분포와 분고에서 제안한 회귀분석 이후 연도별·의료기관별 고정효과 추정치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각 의료기관별로 연도별 항생제 처방률 분포와 회귀모형 고정효과 추정치 분포에서의 각각의 위치를 분위로 식별한다. 회귀분석을 통한 고정효과 추정치는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보다 본질적으로 강건한 지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회귀분석을 통한 고정효과의 추정치가 항생제 처방률 지표에 비해 얼마나 유의하게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두 가지 다른 분포에서 도출되는 의료기관별 처방 행태의 분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귀분석 및 자료 처리 등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자료분석 과정에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존 항생제 처방률에 근거하여 각 연도별 5분위로 구분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항생제 처방 경향을 확인한 이후,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고정효과 추정치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분포를 도출했을 때, 동일한 5분위 기준으로 분위의 상대적인 이동이 있었는지의 결과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5분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¹⁵⁾에서 공개하고 있는 평가등급 기

회귀분석을 통한 고정효과 추정치는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보다 본질적으로 강건한 지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회귀분석을 통한 고정효과의 추정치가 항생제 처방률 지표에 비해 얼마나 유의하게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ira.or.kr/re/diag/getDiagEvlList.do?pgmid=HIRAA030004000100>, 검색일자: 2020. 1. 9.

고정효과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가 기존 항생제 처방률에 근거한 평가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46.4%에 달하고 있다.

준이 5분위이기 때문이다. 분위가 높을수록 항생제 처방의 경향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6>은 두 분포의 결합 확률 분포로 이해할 수 있다. 고정효과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가 기존 항생제 처방률에 근거한 평가 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5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역으로 약 46.4%의 의료기관은 기존 평가 결과와 상이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은 <표 6>의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요약 정보이다. 항생제 처방률 1분위, 즉 항생제 처방률 기준으로 하위 20%의 낮은 항생제 처방 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 중 약 19.6%의 의료기관이 고정효과 추정치에 근거한 분포에서는 1분위보다 높은 분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 2~5분위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약 8.1%의 의료기관은 고정효과 추정치에 근거해 1분위의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항생제 처방률 기준 항생제 처방이 가장 빈번한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의료기관 중 34.9%의 의료기관은 회귀분석을 통해 환자, 질병, 환경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 보다 낮은 처방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표 6> 회귀분석 고정효과 vs. 항생제 처방률 분포 변화

(단위: 개수, %)

구분	회귀모형 추정 후 고정효과에 근거한 분위					계	
	1	2	3	4	5		
항생제 처방률에 근거한 분위	1	1,815 (73.10)	391 (20.22)	52 (2.59)	0 (0.00)	0 (0.00)	2,258 (21.51)
	2	502 (20.22)	881 (45.55)	447 (22.29)	108 (5.45)	8 (0.38)	1,946 (18.54)
	3	146 (5.88)	576 (29.78)	787 (39.25)	462 (23.32)	131 (6.26)	2,102 (20.02)
	4	20 (0.81)	84 (4.34)	620 (30.92)	782 (39.48)	591 (28.22)	2,097 (19.98)
	5	0 (0.00)	2 (0.10)	99 (4.94)	629 (31.75)	1,364 (65.14)	2,094 (19.95)
	계	2,483 (23.65)	1,934 (18.42)	2,005 (19.10)	1,981 (18.87)	2,094 (19.95)	10,497 (100.00)

주: () 안은 해당 셀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의 비중을 %로 표시한 것임
출처: 저자 작성

<표 7> 항생제 평가지표 분포 변화

(단위: 개소, %)

구분	기관수	전체	비중
항생제 처방률 분포, 회귀모형 고정효과 분포 분위 불일치	4,868	10,497	46.38
항생제 처방률 분포(1분위) 회귀모형 고정효과 분포(2~5분위)	443	2,258	19.62
항생제 처방률 분포(2~5분위) 회귀모형 고정효과 분포(1분위)	668	8,239	8.11
항생제 처방률 분포(5분위) 회귀모형 고정효과 분포(1~4분위)	730	2,094	34.86
항생제 처방률 분포(1~4분위) 회귀모형 고정효과 분포(5분위)	730	8,403	8.69

출처: 저자 작성

<표 8>에서는 두 분포 간 분위 변화가 의료기관 종별 중심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했다. 항생제 처방률 분포에서의 분위 대비 회귀모형 추정 고정효과 분포에서의 분위가 상승 혹은 하락한 의료기관의 비중을 집계한 정보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변화 정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일부 예외¹⁶⁾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병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위 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 기초 정보 및 임상 정보의 보정효과가 소규모 병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8> 의료기관 종별 분위 변화

(단위: %)

종별	분위 상승	분위 하락
상급종합병원	12.90	29.03
종합병원	18.78	14.36
일반병원	19.92	25.42
의원	20.90	25.72

주: 5분위 기준으로 항생제 처방률 분포 대비 회귀모형 추정 고정효과 분포에서의 분위 변동이 있는 경우를 집계함
출처: 저자 작성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병원평가 정보 및 가감지급사업에 활용되는 평가지표 결과가 회귀모형을 통한 자료분석 이후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환자 및 의료기관에 잘못된 평가 정보를 전달할

전반적으로 일반병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위 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 기초 정보 및 임상 정보의 보정효과가 소규모 병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6)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분석기간인 2002~2015년 동안 연간 100건 이상 급성 상기도 감염을 진료한 기관이 (기간-연도) 기준으로 31개소(연도 기준으로 기관 중복 가능)이므로 표본 크기가 크지 않다.

분석 결과가 항생제 처방의 모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미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현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고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비의 가감이 이뤄지는 금전적인 왜곡을 수반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급 가감지급사업에 활용되는 세 종류의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개편된 평가제도에 따라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의료기관 간 상대 분위가 아닌 평가지표값 자체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절대평가로 변화하는 경우, 강건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김지에 외, 2017). 분석 결과가 항생제 처방의 모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가 미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현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고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패널자료 분석 시 환자, 의료기관 등의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요인(unobserved time-invariant confounders)을 통제하기 위해 실증분석에서 널리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즉, 고정효과가 통제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별·의료기관별 각 고정효과와 추정치 자체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본고에서처럼 의료비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당국에서 관찰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 회귀모형을 통해 관찰 가능한 통제변수의 효과 및 오차항을 통한 무작위적 상황 등을 통제된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여하는 각 이해당사자의 잠재된 행태를 고정효과 추정치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물론 회귀 모형 추정치를 통해 추정된 의료기관의 고유 행태는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의료공급자 및 환자가 유발하는 요인 등 다양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추정치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각 요인을 분리 식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임상적 상황에서의 추가 정보 활용 및 보다 정교한 계량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3의 지불인이 관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정보량으로 간단한 회귀분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각 의료기관별로 직면하는 환자군의 특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이

를 항생제 처방률이라는 산출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피평가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회귀분석을 통해 환자의 연령대, 성별 및 상병, 계절적 요인, 초/재진 여부 등 정보를 통제한 이후 기관별 항생제 활용 경향을 분포로 확인했으며, 단순 항생제 처방률을 활용했을 경우와 대비해서 평가 결과의 분포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서술과 같이 추정된 의료기관 고정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처방 정보와 그렇지 않은 처방 정보로 분리·식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표본코호트DB 대신, 급성 상기도 감염 진료를 받은 전수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¹⁷⁾

2018년 항생제 처방률 등 몇몇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가감지급사업의 개선이 제안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심평원에서는 과거 연도 평가지표 결과의 분포를 활용한 사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며,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각 의료기관별 이질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항생제 처방률 평가지표의 활용 및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에 대한 감산 대상 확대 등 근거가 부족한 절대 기준의 제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보다 부족한 정보량을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정보의 열위를 위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환자의 연령대, 성별 및 상병, 계절적 요인, 초/재진 여부 등 정보를 통제한 이후 기관별 항생제 활용 경향을 분포로 확인했으며, 단순 항생제 처방률을 활용했을 경우와 대비해서 평가 결과의 분포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 다만, 표본코호트DB처럼 장기간(2002~2015년)에 걸친 청구자료를 전수자료로 확보할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과 같은 다빈도 상병은 자료의 크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원격분석 시스템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일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유소아급성중이염항생제평가」, 관련 내부 자료, 2015a.

_____, 「2014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 2015b.

_____, 「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 2018.

_____, 「항생제 처방률 감소 위한 가감지급사업 개선 제안」, 보도자료, 2018. 4. 25.

_____,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2019.

김신우, 「상기도 감염: 언제 항생제를 사용할까?」,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pp. 151~156.

김지애·이혜영·김수진,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모형 개선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메디컬타임즈,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감산 큰폭 늘자 의원들 발끈」, 2019. 7. 3.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449>, 검색일자: 2019. 9. 21.

박미혜·김수진·임민성,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어광수·변재준·신호철·김철환·이재호·최윤선·노용균, 「가정의학과 개원의의 호흡기 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양상」, 『가정의학회지』, 21(7), 2000, pp. 901~913.

정재훈, 「최근의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논란에 대한 소고 (小考)」, 『International Journal of Thyroidology』, 7(1), 2014, pp. 1~6.

최윤정. Shalowitz, Joel I,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의 주요 요인분석」,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6(1), 2011, pp. 15~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항생제 내성」,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20, May 2016.

Abaluck, J., Agha, L., Kabrhel, C., Raja, A., & Venkatesh, A.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medical testing: Intensity and allocation of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106(12), 2016, pp. 3730~3764.

- Ahn, H. S., Kim, H. J. & Welch, H. G., “Korea’s thyroid-cancer “epidemic”—screening and overdiagnosis,” *N Engl J Med*, 371(19), 2014, pp. 1765-1767.
- Correia, S., “Linear models with high-dimensional fixed effects: An efficient and feasible estimator,” 2017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at: <http://scoreia.com/research/hdfe.pdf>.
- de la Poza Abad, M., Dalmau, G. M., Bakedano, M. M., González, A. I. G., Criado, Y. C., Anadón, S. H., ... & Thió, E. B., “Prescription strategies in acute uncomplicated respiratory infection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internal medicine*, 176(1), 2016, pp. 21-29.
- OECD, Pharmaceutical spending (indicator), 2019 doi: 10.1787/998feb6-en.
- Real, K., Bramson, R., & Poole, M. S., “The symbolic and material nature of physician identity: Implications for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Health communication*, 24(7), 2009, pp. 575-58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https://www.hira.or.kr/re/diag/getDiagEvList.do?pgmid=HIRAA030004000100>, 검색일자: 2020. 1. 9.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¹⁾

I. 서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국정과제 2)’,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국정과제 9)’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주요과제이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은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그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공공기관 부정부패의 주요 이슈로 지적되어 왔으며 2016년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2012~2013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합격자 518명 전원이 채용 청탁 대상자임이 밝혀지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과 현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감사원의 감사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정기점검은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와 채용제도 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 지방공기업, 민영화된 기업의 채용비리도 잇따라 언론에 발표되면서 채용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일자리는 직업의 안정성과 보수 수준에 있어 대표적인 좋은 일자리로 꼽히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청년층의 박탈감은 오히려 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kheo@kipf.re.kr)

1) 본고는 저자가 작성한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연구: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의 내용을 『재정포럼』의 취지에 맞게 발췌, 정리, 발췌한 것이다.

지게 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채용비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발생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용비리의 발생 현황과 특성,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자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채용비리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자료의 수집과, 추적, 분석을 통해 향후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공공기관의 채용제도와 채용 비리

1. 공공기관의 채용제도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유권과 지배력을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근거하여 정부가 매년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공공기관은 339개이며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가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8년 기준 38.3만명으로 이는 2014년 기준 30.5만명보다 25.6% 증가한 수치이다.²⁾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정원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공공기관의 순 신규채용³⁾은 1.8만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엔 2.7만명으로 50%가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용비리의
발생 현황과 특성,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9. 4. 30.

3) 순 신규채용은 전체 채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공공기관 채용의 첫 번째 특징은 채용제도의 많은 부분이 각종 지침과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규채용 추이(2014~2018년)

(단위: 만명, %)

구분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증 감 (B-A)	증감률
정규직	30.5	31.5	32.8	34.6	38.3	7.8	25.6
무기직	2.5	2.7	2.9	3.5	5.1	2.6	104.0
비정규직	4.4	4.3	3.7	3.4	2.5	-1.9	-43.5
신규채용	1.8	1.9	2.1	2.3	3.4	1.6	88.9
순신규 채용 ¹⁾	1.8	1.9	2.1	2.2	2.7	0.9	50.0

주: 1) 순신규채용은 전체 채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9. 4. 30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 채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채용제도의 많은 부분이 각종 지침과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은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혁신 지침」,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등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고용정책과 공공기관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의 규제와 권장사항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년고용 의무비율(3%) 준수,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 도입, 고졸자·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청년인턴, 개방형 계약직제, 블라인드 채용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는 해당 규정이 단계별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채용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 2> 공공기관 채용 관련 법과 규정

관련 법·규정	내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혁신지침」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채용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가 참여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권고안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인재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설정 및 서류전형 가점 부여 • 청년고용 의무비율 준수 • 고졸, 청년인턴,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 여성관리자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확산 • 비정규직, 간접고용 관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년고용 의무비율(3%) 준수
「공공기록물법」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도면·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채용일반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권장
「국가유공자법」	• 공기업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대하기 위해 가점 부여 • 보훈가점은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다가 대상자별로 전형별 만점의 5~10% 부여 •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 인원의 30%로 제한 • 기관별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 고용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내에서 보훈특별고용을 실시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고용의무 부과
「고령자 고용법」	•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수립·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구인자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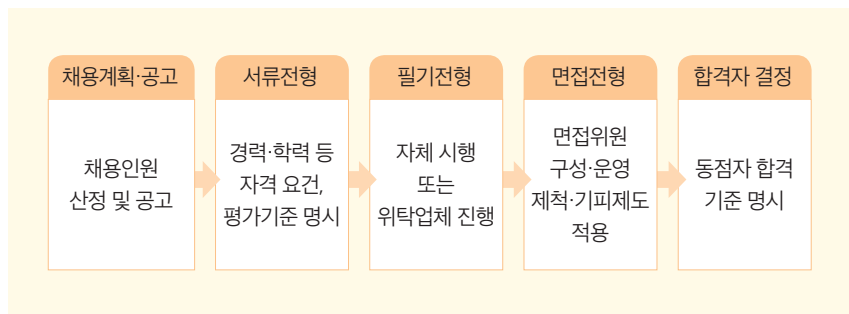
출처: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 채용의 두 번째 특징은 각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채용 업무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공공기관 채용의 두 번째 특징은 각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채용절차는 기관마다 각기 다를 수 있고 채용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도 각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기관별로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용계획의 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의 절차를 거친다. 공공기관은 업무상 필요 인원을 산정하여 기획재정부, 주무부처와 인력증원 협의를 통해 다음 연도 정원을 확정된 후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을 확정한다.⁴⁾ 다만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채용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⁵⁾

[그림 1] 공공기관 직원 채용절차⁶⁾



주: 1)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직원 채용절차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에 따라 채용 절차의 차이가 있음
출처: 감사원, 2017. p. 46의 내용을 수정 작성

2.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정의

공공기관은 취업 이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근무조건과 보수 수준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인기 있는 자리로 선호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일자리와 같은 우수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기관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4)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운영 실태」, 2017.

5)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운영 실태」, 2017.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채용 업무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에 관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⁶⁾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①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하여 부적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와 ②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탈락시키기 위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③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은폐행위 역시도 채용비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채용은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 중 하나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채용에서 불공정 행위와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⁷⁾ 이러한 채용비리는 편파주의, 차별주의, 족벌주의(nepotism), 이해관계 상충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UN부패방지협약(UNCAC)의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인사업무에 있어 효율성, 투명성과 청렴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채용, 교육, 보수 등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⁸⁾ OECD의 공기업 부패방지 가이드라인(2019)에서는 공기업 인사행정 업무에서 직원의 채용·유지·해고가 객관적이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채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⁹⁾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비리 중에서도 채용비리는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범위도 넓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한 채용 행위를 통해 부적격자가 채용된 경우, 그로 인해 기관의 업무성과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범위는 업무의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부적격자가 근무하는 기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밖에 없다.

3.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오랜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

**채용은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 중 하나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채용에서 불공정
행위와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가목, 또는 다목

7) OECD,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rruption: What Are the Risks and What Can Be Done?*, OECD Publishing, Paris, 2018.

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04.

9) OECD, *Guidelines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Paris, 2019.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비리 중에서도 채용비리는
그 영향이 장기간에
지속되고 그 범위도 넓은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적되어 왔으나, 그 규모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되어 왔다. 2017년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대대적인 감사와 점검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도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2012~2013년 1, 2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진행된 신입사원 공모에서 일반사무직과 카지노호텔 부문 518명을 채용하였다. 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강원랜드 기관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대상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¹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3년에 총청탁 대상자는 모두 625명이며 전체 지원자 5,286명(경쟁률 10.2 대 1) 중 합격한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과정에서 해당 지원자들을 통과시키려고 공개채용 자격조건을 변경하였고 점수를 수차례 조작하였으며 청탁자가 많아 예정된 채용인원보다 40여명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였다. 강원랜드에 채용을 요청한 청탁자는 120명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기관장, 전·현직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촌동생,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 교감, 종교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2015년 내부감사에서 드러났으며 2016년 기관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7년부터 정부 특별점검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게 되었다.¹¹⁾

이 외에도 정부의 점검과 감사를 통해 다수의 채용비리 사례가 발견되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신규 채용에서는 채용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체의 절차 없이 채용하거나 면접전형만을 실시하여 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¹²⁾ 상대적으로 합격이 용이한 인턴직·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채용한 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채용업무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2013년 11월 강원랜드의 워터랜드 내 워터월드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에서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최종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되었다.¹³⁾

10) 한겨레, 「강원랜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2017. 10. 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4611.html#csidx2d42596d49b3e7796492dd91ea1de15. 검색일자: 2018. 5. 22.
 11)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른 1인의 경우 1심이 진행 중임. 연합뉴스, 「권성동 채용비리 공방」, 2019.11.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089700004?input=1195m>. 검색일자: 2020. 1. 3. 파이낸셜뉴스,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엄동열 한국당 의원 징역 3년 구형」, 2019.11.18. <http://www.fnnews.com/news/201911181553332073>. 검색일자: 2020. 1. 3.
 12) 산업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2018. 8. 7.
 13)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 한국디자인진흥원¹⁴⁾

디자인산업진흥원은 2015년 채용에서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를 추천하여 서류전형 평가 없이 합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⁵⁾ 이 외에도 기관 임직원이 추천한 17명을 정당한 평가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2014년 하반기 경력직 채용에서도 인적성 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관장, 인사실장, 실무자 모두 검찰에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부정입사자는 모두 퇴출되는 수순을 밟았다.

■ 수서고속철도(SRT)

수서고속철도(SRT)의 상임이사 영업본부장은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인의 자녀 등 8명을 부정 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사노무팀 직원과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점수를 조작하였고, 이 중 6명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¹⁶⁾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직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배수를 조정하여 특정인의 서류전형을 통과시켰고, 면접전형에서는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어 특정인을 채용하였다.¹⁷⁾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청년인턴 채용에서 기관장의 친척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였다. 본사 임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고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표를 재작성하여 합격처리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청년인턴을 규정을 위반하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고,¹⁸⁾ 2016년 신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그 외 직원을 필기시험 점수 과락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불공정한 채용행위를 통해 부적격자가 채용된 경우, 그로 인해 기관의 업무성과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범위는 업무의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14) 디자인산업진흥원에서 명칭 변경
15)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16) 연합뉴스, 「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 SRT 24명 채용비리」, 2018. 5. 15.,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5074600004?input=1195m>, 검색일자: 2018. 5. 22.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8. 1. 29.

18)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채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부적격자가 근무하는
기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밖에 없다.**

■ 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는 2016년 1급 전문계약직 채용에서 기관장의 지인을 채용절차 없이 채용¹⁹⁾하였다. 동일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서류심사 이전에 합격자를 확정 통보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사장 추천을 위한 채용 진행과정 중 산업부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여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하였다.²⁰⁾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제로(zero)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비교적 채용이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²¹⁾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관이 자체 조사한 ‘정규직 전환자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 1일 기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전 자체 조사 결과보다 8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기관은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입직경로를 가지고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였다.²³⁾

■ 한전KPS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는 2018년 정규직으로 확정된 기존 직원의 자녀 11명 전원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PS주식회사는 2018년 4월 1일 24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5%에 달하는 11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밝혀

19)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20)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21) 일요신문, 「제2의 구의역 사고 막으려더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막전막후, 2018. 10. 19.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3323

22) 감사원,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문, 2019. 9.

23) 감사원,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문, 2019. 9.

진 것이다. 여기에는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직급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공채시험이 아닌 비교적 입사가 쉬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²⁴⁾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2018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40명 가운데 39명(16.3%)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져 기존 조사보다 실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비정규직은 정규직 채용과 달리 필기시험이나 인·적성 시험을 치르지 않아 입사가 훨씬 용이하다.

Ⅲ.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현황 및 분석

1.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2016년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알려지면서 그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고, 감사원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와 점검을 시작하였다. 2017년 2월 주요 공공기관 53개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부터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기관 1,19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을 정례화하였고, 이에 따라 두 번째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가 2018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3차 정기 전수조사도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채용비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이슈가 되면서 감사원은 2018년 12월부터 5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이슈가 되면서 감사원은 2018년 12월부터 5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4)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25) 감사원,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문, 2019. 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2019년 정기점검
결과에서 이전보다
적발 기관수는 유사하지만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부의 채용비리 감사와 점검

구분	대상 기관	대상 기간 / 대상 업무	방법	결과
감사원 감사 (2017. 8.)	공공기관(330개) 중 53개 기관 - 공기업 35개 - 준정부기관 6개 - 기타공공기관 12개	2013~2017년 임직원 채용 관련 업무 전반	채용비리 점검 분야, 채용 프로세스 단계별 분석·점검 분야, 정부 일자리시책 등의 실효성 분야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39개 기관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100건 확인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2018. 1.)	- 275개 공공기관 ¹⁾ - 659개 지방공공 기관 - 256개 기타공직유 관단체	최근 5년간 (2013~2017년 하반기) 인사 채용실적 점검	-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 - 각 부처별 감사관실을 중심 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 여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현 장점검 위주로 진행 - 전수조사 보완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	275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 257개 기 관 적발. 수사의뢰 47 건, 징계문책 123건 적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2019. 2.)	- 333개 공공기관 - 634개 지방공공 기관 - 238개 기타공직 유관단체	-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 -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 친인척 특혜채용	-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 관 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 -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 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	333개 공공기관 중 280개 기관 적발, 수 사의뢰 19건, 징계요 구 65건 등 총 84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감사원 감사 (2019. 9.)	5개 공공기관	- 정규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 - 무기계약직, 기간 제 근로자 전환 및 신규채용	- 가족관계자료 확인 - 무기계약직, 기간제 채용 및 전환 과정 조사	5개기관 정규직 전환 자 3,048명 중 333명 (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 무기계 약직 전환 시 비공개 채용, 서류, 면접심사 불공정 등

주: 1) 2017년 지정 중앙정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 또는 부처 자체감사 기 실시기관 55개를 제외한 275개 기관
출처: 감사원(2017; 2019)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에 실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실태 감사」에서는 특히 기관장의 부당지시, 채용청탁으로 인한 비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당초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인원, 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부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평가서류 및 점수조작, 절차위반 및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 부정

이 발견되었으며 기관장도 이를 묵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2018. 1.)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결과(2019. 2.)를 비교하면 2019년 정기점검 결과에서 이전보다 적발 기관수는 유사하지만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소계는 170건에서 8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업무 부주의 소계도 2,141건에서 805건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안과 전년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전수조사 2년차에서 전년도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안과
전년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전수조사 2년차에서
전년도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채용비리 특별점검(2018. 1.)과 정기점검(2019. 2.) 적발 건수

(단위: 개, 건)

구분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건수	채용비리 소계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 의뢰	징계 문책		주의 경고	개선 기타등		
특별 점검 (2018)	공공 기관	330	275	257	2,311	170	47	123	2,141	1,210	931
	지방 공공 기관	824	659	489	1,488	116	26	90	1,372	909	463
	기타 공직 유관 단체	272	256	200	989	52	10	42	937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26	-	-	-	-	-
합계	1,426	1,190	946	4,788	364	109	255	4,450	2,414	2,036	
정기 점검 (2019)	공공 기관	338	333	280	889	84	19	65	805	420	385
	지방 공공 기관	847	634	458	1,145	62	9	53	1,083	560	523
	기타 공직 유관 단체	268	238	172	600	36	8	28	564	180	384
합계	1,453	1,205	910	2,634	182	36	146	2,452	1,160	1,292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중대한 채용비리의
발생·개연성에 해당하는
수사/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전체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128개
기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의 35.5%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자료 분석

본 장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와 정부 전수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이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감사원 감사자료(2017. 8.)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2018. 1.),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2019. 2.), 감사원의 비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2019. 9.)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본 정보와 특성에 관련된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2018년 기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361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규모(직원수, 수입),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 운영기간, 직원 평균임금의 기초 통계는 <표 5>와 같다.

<표 5> 공공기관 특성의 기초 통계¹⁾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직원수(명)	361	887	2,446	17	29,331
수입(백만원)	360	1,705,101	7,236,309	1,875	70,400,000
2013~2018 신규채용(명)	361	289	622	0	5,567
운영기간(년)	360	22.7	17.4	1.6	113.3
직원 평균임금 (천원)	360	66,872	14,605	20,292	111,367

주: 1) 2018년 4월 기준, 23개 부설기관의 정보도 포함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가.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중대한 채용비리의 발생·개연성에 해당하는 수사/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전체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128개 기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의 35.5%에 해당한다. 수사/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이 2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적발되어 38.1%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기타공공기관 37.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6.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1.3%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6> 공공기관 유형별 채용비리 적발 기관수

(단위: 개, 건, %)

공공기관 유형	세부유형	기관수 (A)	2018년 수사/징계/문책(B)	2019년 수사/징계/문책(C)	2018년, 2019년 연속 적발 (D)	2018~2019 적발기관수 (E=B+C-D)	수사/징계/문책 비율(E/A)
공기업 (35)	시장형	14	3	1	0	4	28.6
	준시장형	21	4	5	1	8	38.1
준정부 기관 (88)	기금관리형	16	3	3	1	5	31.3
	위탁집행형	72	21	7	2	26	36.1
기타공공기관		215	52	45	16	81	37.7
부설기관		23	4	0	0	4	17.4
합 계		361	87	61	20	128	35.5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소속 정부 부처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인 부처 중에 수사/징계/문책 비율은 환경부 소속기관이 전체 10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해당하여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나. 공공기관 소속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소속 정부 부처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인 부처 중에 수사/징계/문책 비율은 환경부 소속기관이 전체 10개 기관 중 10개 기관에 해당하여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다음으로는 교육부 소속기관이 73.9%,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60.9%,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이 50.0%,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 50.0%, 특허청 소속기관이 5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속기관이 5개 미만인 부처에서는 국방부 100.0%, 인사혁신처 100.0%, 경찰청 100.0%, 관세청 100.0%, 기획재정부 75.0%, 행정안전부 66.7%의 순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공공기관 소속 정부 부처별 채용비리 적발

(단위: 개, 건, %)

정부부처	기관수 (A)	2018년 수사/징계/문책(B)	2019년 수사/징계/문책(C)	2018년, 2019년 연속 적발 (D)	2018~2019 적발기관수 (E=B+C-D)	수사/징계/문책 비율 (E/A)
고용노동부	12	5	2	1	6	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9	2	0	11	18.3
교육부	23	10	16	9	17	73.9
국방부	3	0	3	0	3	100.0
국토교통부	23	7	10	3	14	60.9

교육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문책을 당한 기관은
2018년 10개, 2019년에는
16개 기관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7>의 계속

기획재정부	4	2	1	0	3	75.0
농림축산식품부	10	2	1	0	3	30.0
문화체육관광부	33	2	1	0	3	9.1
법무부	4	2	1	1	2	50.0
보건복지부	25	6	4	1	9	36.0
산업통상자원부	41	12	3	1	14	34.1
여성가족부	5	0	2	0	2	40.0
외교부	3	0	0	0	0	0.0
중소벤처기업부	12	4	4	2	6	50.0
통일부	2	0	1	0	1	50.0
해양수산부	19	4	2	0	6	31.6
행정안전부	3	1	1	0	2	66.7
환경부	10	8	3	1	10	100.0
국가보훈처	3	0	0	0	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0	0.0
인사혁신처	1	0	1	0	1	100.0
경찰청	1	1	0	0	1	100.0
관세청	1	1	0	0	1	100.0
기상청	3	1	0	0	1	33.3
농촌진흥청	1	0	0	0	0	0.0
문화재청	1	0	0	0	0	0.0
방위사업청	2	0	0	0	0	0.0
산림청	3	1	0	0	1	33.3
소방청	1	0	0	0	0	0.0
특허청	6	3	1	1	3	50.0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0	0.0
금융위원회	8	0	2	0	2	25.0
방송통신위원회	2	0	0	0	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0.0
국무조정실	27	6	0	0	6	22.2
합 계	361	87	61	20	128	35.5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교육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문책을 당한 기관은 2018년 10개, 2019년에는 16개 기관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자료에서

전체 공공기관이 2018년보다 2019년에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9년에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다른 부처와 그 발생 양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 병원 15개 기관 중 14개 기관이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립대학교 병원 15개 기관 중 14개 기관이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여부

(단위: 건)

유형		기관명	2018~2019 채용비리 적발 여부	2018~2019 채용비리 적발 여부	2018년, 2019년 연속적발 여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위탁 집행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한국장학재단	×	×	×
기타공공기관		국립평생교육진흥원	○	○	○
		동북아역사재단	×	×	×
		한국고전번역원	×	○	×
		한국사학진흥재단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	×
		강원대학교병원	○	○	○
		경북대학교병원	×	○	×
		경상대학교병원	×	○	×
		부산대학교병원	○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
		서울대학교병원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
		전남대학교병원	×	○	×
		전북대학교병원	○	○	○
		제주대학교병원	○	○	○
		충남대학교병원	×	○	×
		충북대학교병원	○	○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	○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합계			10	16	9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을 임직원수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채용비리가 더 높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공공기관 규모

공공기관의 규모와 채용비리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임직원수와 연간 수입액에 따라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을 임직원수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채용비리가 더 높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직원수가 613~29,331명에 속하는 4사분위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수가 204~612명에 해당하는 3사분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39.8%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 공공기관 규모(직원수)별 채용비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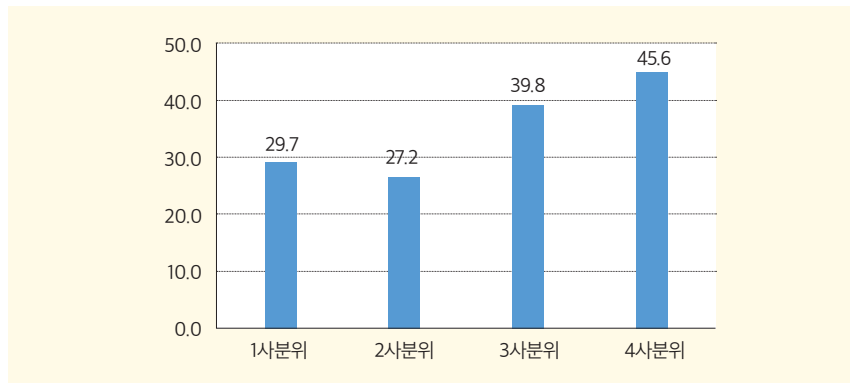
(단위: 개, %)

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직원수 범위(명)	17~81	87~203	204~612	613~29,331
채용비리 기관수(A)	27	25	35	41
전체기관수(B)	91	92	88	90
채용비리 기관비율(A/B)	29.7	27.2	39.8	45.6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공공기관 규모(직원수)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수입 규모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규모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 빈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수입이 많아질수록 채용비리 발생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 규모가 가장 큰 4사분위의 채용비리 적발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3분위가 35.6%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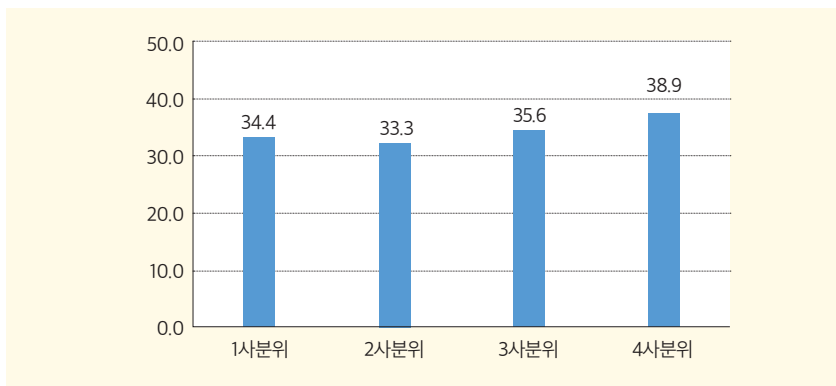
<표 10> 공공기관 규모(수입)별 채용비리 발생

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수입 범위 (백만원)	1,875~24,039	24,040~75,323	75,324~353,067	353,068~41,000,000
채용비리 기관수 (A)	31	30	32	35
전체기관수(B)	90	90	90	90
채용비리 기관비율 (A/B)	34.4%	33.3%	35.6%	38.9%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공공기관 규모(수입)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공공기관의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이 많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더

공공기관의
수입 규모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규모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 빈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수입이 많아질수록
채용비리 발생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이 많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더 높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높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가 222~5,567명에 해당하는 4사분위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은 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규모가 84~221명에 속하는 3사분위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은 32.2%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별 채용비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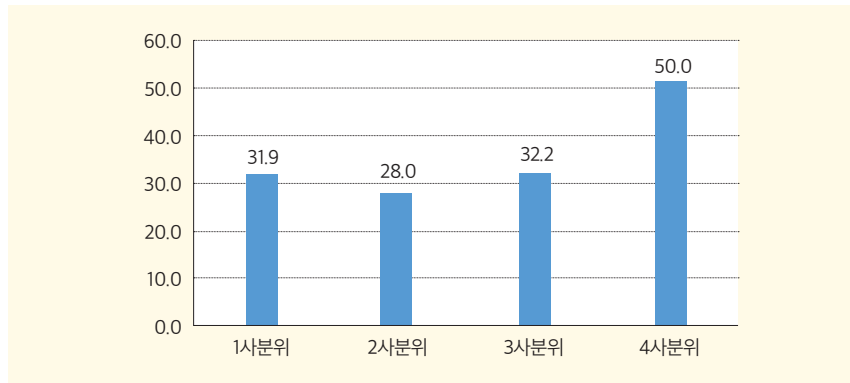
(단위: 명, 개, %)

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신규채용 인원	0~42	43~83	84~221	222~5,567
채용비리 기관수(A)	29	26	28	45
전체기관수(B)	91	93	87	90
채용비리 기관비율(A/B)	31.9	28.0	32.2	50.0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마. 공공기관 운영기간

공공기관의 설립 이후 운영기간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결과가 양극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영기간이 31.6년 이상인 4사분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이 42.2%로 가장 높았으

며 운영기간이 9.7년 이하인 1사분위의 공공기관이 37.8%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기간이 짧은 기관의 경우, 채용제도 운영의 미숙이나 엄정함의 부족으로 채용비리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채용비리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관의 채용제도 운영에 있어서 기관의 내·외부 청탁과 결탁이 제도화되어 가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체계적인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공공기관 운영기간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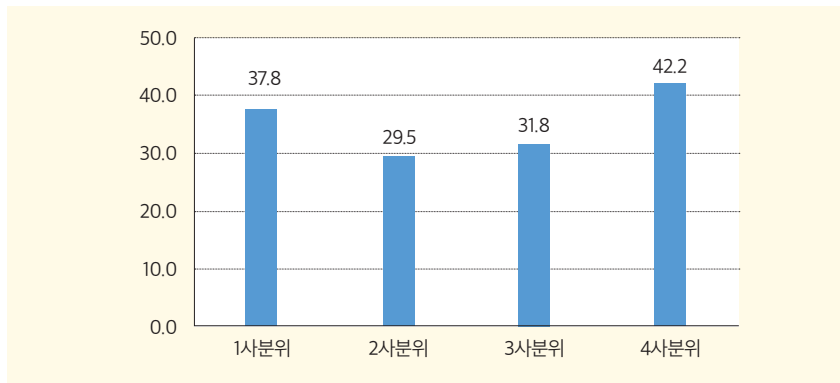
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운영기간 범위	1.8~9.6	9.7~17.8	17.9~31.5	31.6~113.3
채용비리 기관수(A)	34	28	27	38
전체기관수(B)	90	95	85	90
채용비리 기관비율(A/B)	37.8	29.5	31.8	42.2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운영기간이 31.6년 이상인 4사분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기간이 9.7년 이하인 1사분위의 공공기관이 37.8%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공공기관 운영기간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바.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별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직원 연평균임금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

공공기관의
직원 연평균임금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로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연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발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연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발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56,992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1사분위에서 채용비리의 발생은 4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사분위 38.9%, 3사분위 37.8%의 순이었다. 4사분위는 채용비리 발생이 2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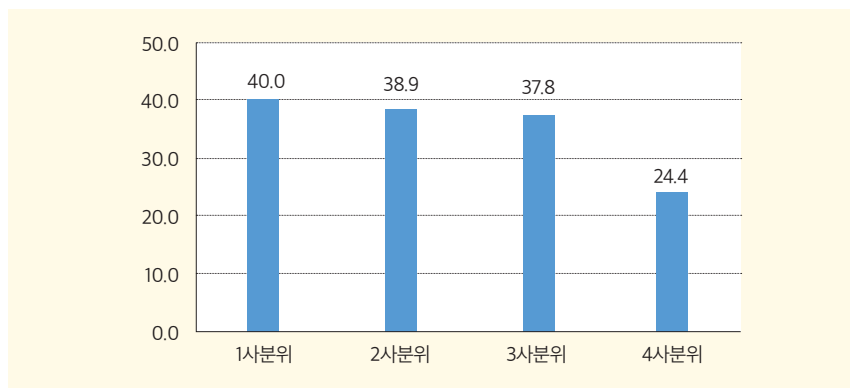
<표 13>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별 채용비리 발생

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평균연봉 범위 (천원)	20,292~56,992	56,993~65,700	65,701~76,652	76,855~111,367
채용비리 기관수 (A)	36	35	34	22
전체기관수(B)	90	90	90	90
채용비리 기관비율 (A/B)	40.0%	38.9%	37.8%	24.4%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별 채용비리 발생

(단위: %)



출처: 감사원(2017. 8; 2019. 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1; 2019.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의 자료(2018. 4.)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²⁶⁾ 정부의 대응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전예방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 조항은 존재하지만 관련된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피해 복구에 관련된 사항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완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즉각적인 업무배제 및 퇴출에 대한 명문화,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의 연장,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마련 및 향후 공공기관 응시자격 제한, 부정채용 청탁자 명단 공개 추진과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여 기관 차원의 개선을 촉진하도록 하였다.²⁷⁾

사전예방 방안으로는 상시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감독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관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채용비리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의 개선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선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효과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응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비리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채용비리 발생 기관의 특성 분석 및 취약기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채용비리가 높게 발생하는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전예방 방안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2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8. 1. 29.

27) 「채용비리, 양성평등 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증대한 사회적 기본채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10.65). 채용비리로 인한 평가 결과의 조정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12. p. 57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특성이 채용비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는 좀 더 엄밀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채용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

관 채용비리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대규모로 발생하는 기관의 특성과 부문을 파악하여 채용비리 취약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자료분석 결과는 특정 부처 소속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 소속의 의료기관은 채용비리 발생비율도 높지만 이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기관별 차이를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개선대책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발생원인과 기관의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유형, 소속부처, 규모, 운영기간,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이 채용비리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는 좀 더 엄밀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채용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에 대한 자료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점검의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만 이보다 경미한 문책, 주의, 통보 등의 경우는 기관명이나 상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채용제도 운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이의 보완을 통해 채용비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공개에 있어 채용비리의 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수반된다면, 채용비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2017.
- _____,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 문 2019. 9.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12.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1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 개최」, 2017. 10. 11.
- _____,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8. 1. 29.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9. 4. 30.
-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2018. 1. 29.
- _____,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2019. 2. 20.
- 산업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2018. 8. 7.
- 연합뉴스, 「사장 처조카·노조위원장 지인이면 ‘합격’ SRT 24명 채용비리」, 2018. 5. 15.,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5074600004?input=1195m>, 검색일자: 2018. 5. 22.
- _____, 「권성동 채용비리 공방」, 2019. 11. 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089700004?input=1195m>, 검색일자: 2020. 1. 3.
- 일요신문, 「‘제2의 구의역 사고 막으랬더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막전 막후」, 2018. 10. 19.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3323, 검색일자: 2018. 11. 22.
- 파이낸셜뉴스,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염동열 한국당 의원 징역 3년 구형」, 2019. 11. 18. <http://www.fnnews.com/news/201911181553332073>, 검색일자: 2020. 1. 3.
- 한겨레, 「강원랜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2017. 10. 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4611.html#csidx2d42596d49b3e7796492dd91ea1de15, 검색일자: 2018. 5. 22.
- OECD,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rruption: What Are the Risks and What Can*

Be Done?, OECD Publishing, Paris, 2018.

_____, *Guidelines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Paris, 201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New York, 200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

공공정책포럼 |

■ 제56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 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개요

- **주 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 **일 시** 2019년 12월 20일(금), 07:30 ~ 09:30
- **장 소** 웨라톤 서울 팰라소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07:30 ~ 08:00 **조찬**
배근호 소장
송대희 좌장
 - 08:00 ~ 09:00 **주제 발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09:10 ~ 09:30 **자유 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9년 12월 20일 웨라톤 서울 팰라소호텔 로얄볼룸에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56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배근호 / 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연구센터의 배근호 소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제가 지난 9월 부임한 후 최초의 포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서 많이 불참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대회 전 원장님,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님,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님, 정승일 차관님, 기재부 이용재 심의관님, 정유리 과장님과 여러 공공기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정승일 차관님께서도 공공기관 기관장도 역임하신 경험 많고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삼초초려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대회 / 좌장

오늘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전통 제조업이 해외로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또 동시에 중국의 추격에 의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지만 시급하고 절박하기도 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문제와 정책에 대해 두루두루 경험이 많으신 정승일 차관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제발표 요약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I.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 및 상황

요즘 제조업 및 산업 전반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많은데,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도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환의 시기인 오늘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2주 전 파리에서 열린 IEA 에너지 각료회의를 다녀왔습니다. IEA는 OECD 회원국 중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분야의 선진국 모임입니다. IEA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충분할 때에 이에 대한 백업과 향후 수소경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안타깝습니다. 산업부문에서도 12월 19일 스웨덴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예를 보면 산업별로 무공해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부문에서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



떠난 상황에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심한 경기둔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 성장률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2% 성장률 자체는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D램은 60%, 낸드플래시는 30% 정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267억달러라는 초호황 속에서 950억달러 정도로 내려갔는데, 60% 정도 하락한 단가하락에 비해 선방한 편입니다. 수출 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의 사이클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물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출 대국들 모두 수출이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WEF 경쟁력 순위는 13위로 작년에 비해 2단계 상승했습니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10년 내 최저치로 신용등급이 중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는 경제의 건실성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5위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부처에서는 각종 정책적 노력으로 2.4%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II. 정책 환경 진단

정책 환경을 진단해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

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가 제조업의 키워드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고, AI 기술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약한 수준입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산단 오염배출이 산업계 오염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글로벌 스타트업의 사업들 상당 부분이 국내법상 국내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주력 산업, 신산업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첨단소재 쪽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통상부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전형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최근에는 기술이전 등의 규제가 등장하고, 과거의 슈퍼301조 같은 보호무역주의 도구들도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6분의 1 정도로 감소했고, 육상풍력도 절반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탈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직 미흡한 편이며,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 문제가 심각하고, 아직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III.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 주력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통상 부문에서는 무역강국의 위상 견지, 보호무역주의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시대 개막, 에너지 신산업, 새로운 먹거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산업 발전을 3대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시스템 반도체 부문이 약한 편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근래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첨단 업종의 인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용인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산업은 미국에 이어 2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수출품목의 가장 막내가 가전산업인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산업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조만간 가전산업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R&D와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력 산업의 회복 및 재도약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용을 일으키는 자동차산업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필요 부품수가 적습니다.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미래차산업에서 어떤 부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불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수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부문도 7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부문에서는 압도적인 글로벌 1위입니다. 반도체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석유화학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수출물량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기틀 마련 정책에서 그동안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시장규모가 크고, 범용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장비업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접하면서 시장규모가 작은 소재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량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100대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관세수입의 1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관련 예산이 2.1조원 정도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첫째,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 즉 기술 로드맵의 공유가 필요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기술개발의 리스크를 수요기업, 공급기업, 정부가 분담하게 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신뢰성 평가, 양산 성능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는 수요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수출과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단계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던 품목은 현재 거의 대응해서 해결했습니다. 향후 일본과의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노력은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인프라 완비와 관련해서는 도전적 R&D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변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낮은 도전적인 과제를 장려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같은 주제를 놓고 복수의 사업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는 토너먼트, 복수참여 방식의 R&D를 유도하려 합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서 법이 없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혁신모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전적 과

제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려면 표준 선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도전적 과제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 스마트 산업, 혁신 클러스터, 상생형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에 대한 투자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체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FTA로 세계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는데, 90%까지 높이기 위해 아직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들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고, 보호무역주의에 잘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성과는 WTO 제소 등 무역 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아직 더 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7년 기준 전력믹스 중에 석탄이 43%, 원자력 27%, 재생에너지 7%, 나머지가 가스발전입니다. 향후 석탄은 36%, 원자력은 23%, 재생에너지는 20%, 나머지는 가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자력의 비중은 여전히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 합니다. 2040년에도 원전 비율은 19%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유럽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을 새로 짓는 동구권에서는 석탄발전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에너지믹스를 다

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전을 크게 가지고 있던 프랑스, 일본은 원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독일은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새로 짓는 나라들은 체코, 폴란드를 제외하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자국에 원전을 짓는 나라를 제외하면 수출시장은 동유럽, 영국, 중동 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60기에서 과감한 감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중에도 에너지 비용과 수급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최소 10%의 예비율을 관리하는 등 문제없이 수급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비용 차원에서도 한전의 적자는 내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될 것이고, 내년 유가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료비가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내년 이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 일본 대비 굉장히 저렴한 전기,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원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녹색요금제, 제3자 판매의 새로운 경로 조성,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너지 관련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스마트 배터리의 보급에 따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서비스, 수소경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리문제는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문제이나,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산지훼손 최소화, 태양광 자재 관련 폐기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한화큐셀이 1위고, 엘지전자가 가장 효율이 좋은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두산, 포스코에너지가 세계 1위입니다.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전력시장에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경제가 빠르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IV.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안전 정책

안전 분야에서는 크게 공공기관, 에너지, 산업단지 세 부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안전 관련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SS 보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기반시설 중 오래된 시설의 안전 강화에도 기재부 도움을 받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V. 마치며

미래의 변화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차 시장이 눈앞에 와 있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주행차도 2021년에 레벨 3가 달성되고, 2024년이 되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4가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G 시스템을 활용한 커넥티드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인 5G, 입체지도, 교통관제시스템 개혁,



도로환경 보완 등을 2024년까지 세계 최초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지난 10년을 지배했다면, 다음은 미래차 혁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의 기능이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와 도전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 응답

서정출 / 남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Q: 말씀하신 산업 중에서 빠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소기업 제조부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건설업체 부문도 산업부 소관입니다. 해외 사업은 많은 인력과 기업들이 참여하기에 파급효과가 큼니다. 최근 LNG 터미널 건설 수요가 상당히 많지만 자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GtoG를 통해 사업지원을 해주는데 자금지원 측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금지원을 하는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달러 정도면 세계 어디에서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toG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GtoG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순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부처 협력사업 강

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완선 / 공기업 경영평가 단장

Q: 차관님의 발표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의 SOC가 낙후되어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 유지보수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등을 편성해서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A: 스마트 공장을 활용한 세액공제 신설, 안전·환경 설비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로 볼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 한국조폐공사 기술관리팀장

Q: 에너지에 대한 예비율을 10%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이 융복합과 스마트화라면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에너지 발전의 정책 방향, 공급량 증설,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에너지 거래나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궁금합니다.

A: 전력 수요 총량 관리와 피크 수요 관리가 관건인데,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고, 피크

시간을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방법입니다. ESS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ESS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급속히 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량 수명이 10년이면 배터리는 20년인데, 폐배터리를 재사용해서 저사양 ESS를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 쌀 때 전기를 ESS에 담았다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전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고압 송전탑 건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대가 엄청납니다.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력 수요지 근처의 소규모 발전소 건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인의 지력과 창의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서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 하셨는데, 만화와 같은 미래가 어서 다가오길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마주한 많은 문제에 도전하고, 실패와 재도전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미있고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면서 제56회 공공정책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송대희 / 좌장

산업, 무역, 환경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키워드는 '전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산업, 바이오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가 익숙했던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며칠 전 이세돌과 한돌의 대결에서 이세돌이 승리했는데, 이처럼 한국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일하게 현행 1만 2,069캐나다달러에서 2023년
까지 1만 5천캐나다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캐나다 -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 2019년 12월 9일 캐나다 재무부는 소득세 기초 공제액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함¹⁾
 - 900만명 이상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 2015년 중산층 세금 감축의 성공이 본 개정의 강력한 동인이 됨²⁾
- 향후 4년간 개인 기초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1만 5천캐나다달러³⁾까지 증액할 계획임
 - 2020년에는 현행 1만 2,069캐나다달러⁴⁾에서 1만 2,298캐나다달러⁵⁾로 증가함
 - 목표 공제액에 도달하는 2023년에는 단독 신고자의 경우 300캐나다달러,⁶⁾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가족합산신고자의 경우 600캐나다달러⁷⁾의 세액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자 공제 또한

[포르투갈 - 2020년 예산법안 제출]

- 2019년 12월 16일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2020년 예산법안의 초안인 Draft Bill 5/XIV를 국회에 제출함⁸⁾
- 개인소득세의 과표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비부양 가족의 소득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짐
 -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각 0.3%씩 인상됨
 - 연간 총소득이 2만 9,179유로⁹⁾를 초과하지 않는 18~26세 사이의 비부양 가족의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 첫 3년간 부분적인 면세가 이루어짐
 - 조건에 따라 1년 차에는 소득의 30%, 2년 차에는 20%, 3년 차에는 10%를 공제함
- 법인세와 관련하여 경감세율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액이 인상되었으며, 특허 및 R&D 관련 공

1) Canada - Bill tabled to increase basic personal amount to CAD 15,000 (10 Dec. 2019), News IBFD.

2)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n19/19-104-eng.asp>, 검색일자: 2019. 12. 20.

3)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53만원임

4)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89만원임

5)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109만원임

6) 2020. 1. 6.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7만원임

7) 2020. 1. 7.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54만원임

8) Portugal - Budget for 2020 - draft bill presented (17 Dec. 2019), News IBFD

9)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787만원임

제제도가 확대 및 연장됨

- 17%의 경감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과세 표준이 1만 5천유로¹⁰⁾에서 2만 5천유로¹¹⁾로 인상됨
- 특허박스(patent box) 적용 대상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까지 확대됨
 - 특허박스는 BEPS Action 5에 대응하는 제도로, 과세 시 산업재산권의 임시 사용(특허, 산업 도면 또는 모형)으로 발생한 총수입의 50%를 면제함¹²⁾
- 상업, 공업 또는 농업과 관련된 세법상 포르투갈 거주자 기업과 포르투갈 내의 사모펀드를 보유한 비거주자 기업에 대해 기본 공제에 증분율을 더한 공제를 적용하는 SIFIDE II를 2025년까지 연장함
 - SIFIDE II는 R&D 비용의 32.5%의 기본 공제와, 증분율로 과세연도와 이전 2년의 R&D 평균 비용의 차액에 대해 50%(최대 150만유로)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¹³⁾
 - 증분율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 중 2년 이상 존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요율을 47.5%까지 적용함

■ 부가가치세 부과 시 전기 및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차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공제가 가능해짐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아일랜드 - 특정 자본소득에 대한 면세조항 개정]

- 2019년 12월 12일 아일랜드 국세청은 Finance Act 2017에서 도입된 특정 자본소득의 면세 조항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eBrief No.212/19를 발표함¹⁴⁾
 - 지금까지는 Finance Act 1970 section 53의 적용 관련 이득이나, 베틱 및 복권 관련 소득, 상해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어 왔음¹⁵⁾
-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금, 자영업자의 신탁자금, 연금 일시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됨¹⁶⁾
 - 기부약정서에 근거한 연간 납입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
 - Section 784(4)에 근거한 자영업자의 신탁자금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

10)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47만원임

11)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245만원임

12) PWC 홈페이지, <http://taxsummaries.pwc.com/ID/Portugal-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0. 1. 7.

13) PWC 홈페이지, <http://taxsummaries.pwc.com/ID/Portugal-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0. 1. 7.

14) Ireland - Capital gains tax - exemption of certain compensation payments (16 Dec. 2019), News IBFD.

15) Chartered Accountants Ireland, <https://www.charteredaccountants.ie/taxsource/1997/en/act/pub/0039/sec0613.html>, 검색일자: 2019. 12. 20.

16) 아일랜드 국세청,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19/19-07-10.pdf>, 검색일자: 2019. 12. 20.



- 퇴직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 인터넷 बैं킹과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근로 또는 사업 비용의 30% 이상(연간 최대 2만유로²⁰⁾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가 발생함

[그리스 - 2020년 세제개혁안 의회 제출]

- 2019년 11월 26일 그리스 정부는 세제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⁷⁾

1) 개인소득세¹⁸⁾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과표 구간의 변경이 있었으며, 전자지출 할당 의무 등의 조항이 추가됨
- 근로 및 연금소득에서 0~1만유로¹⁹⁾의 새로운 최저 과표 구간을 도입하고, 해당 구간에 기존의 22%보다 낮은 9%의 세율을 적용함

과세표준구간	세율
0~10000유로 ¹⁾	9%
10,001~20,000유로 ²⁾	22%
20,001~30,000유로 ³⁾	28%
30,001~40,000유로 ⁴⁾	36%
40,001유로~	44%

주: 1)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94만원임
 자료: 그리스 의회 홈페이지,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1141635.pdf>, 검색일자: 2020. 1. 2.
 2)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588만원임
 3)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882만원임
 4)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5,176만원임

- 2020년 1월 1일부터 세금 감면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부양 자녀의 수에 따른 최대 감면 세액이 변경됨

부양 자녀 수	최대 감면 세액
없음	777유로 ¹⁾ (과세 소득이 2만유로 ²⁾ 를 초과하지 않을 때)
1명	810유로 ³⁾
2명	900유로 ⁴⁾
3명 이상	추가 1인의 부양 자녀에 대해 220유로 ⁵⁾ 씩 증가함

주: 1)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1만원임
 2)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588만원임
 3)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05만원임
 4)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17만원임
 5)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9만원임
 자료: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personal income tax and dividend withholding tax (29 Nov. 2019), News IBFD 내용을 재구성

- 건물의 운영, 인테리어 및 에너지 관련 개선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특정 비용의 40%(최대 1만 6천 유로²¹⁾)에 대해 4년간 세금이 공제됨

- 세법상 거주지 개념이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연계된 곳'에서 '개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변경됨²²⁾

17)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summary (03 Dec. 2019), News IBFD
 18)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personal income tax and dividend withholding tax (29 Nov. 2019), News IBFD
 19)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94만원임
 20)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588만원임
 21)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077만원임
 22)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residence of individuals, lump-sum taxation (28 Nov. 2019), News IBFD

- 그리스가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연계’의 개념이 OECD Model Tax가 설명하는 ‘개인적 연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음²³⁾

- 개인적 유대로는 납세자의 가족이 그리스에 함께 거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음²⁴⁾

- 또한 거주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던 종전과 달리, 그리스에 183일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함

■ 이전 8년 중 7년 간 그리스 외 국가에서 거주한 개인에 대해 고정 세액을 부과하고 외국 자산에 대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함²⁵⁾

- 3년 내에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그리스 자산에 최소 50만유로²⁶⁾를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연간 10만유로²⁷⁾의 고정세율을 부과함²⁸⁾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10%에서 5%로 감소함

2) 법인세²⁹⁾

■ 법인세율이 28%에서 24%로 인하되며, EU 규정 1305/2013에 해당하는 농업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13%에서 10%로 인하됨

- 또한 법인세를 선납하는 경우 2018 회계연도에 한하여 산출된 세액의 95%로 재산정됨

■ 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대상에 자본 이득이 포함되도록 확대됨

- European Union Parent-Subsidiary Directive(2011)에 언급된 자격인 최소 36개월간 10% 이상의 참여 지분 및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그리스 거주자에 한해 자본 이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한 참여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법인세의 공제 및 비과세 관련 조항이 개정됨

- 기업에 회계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리스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납부한 기부금이나 환경보호 비용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됨
- 감가상각 및 불량 채권에 대한 공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
 - 여객 운송(16%), 화물(12%) 및 대중교통(5%)에 적용되던 감가상각률이 저탄소 차량(최대 50g CO₂/km)에 대해 배출량과 운송수단에

23)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19/12/recent-amendments-in-greek-tax-legislation.html>, 검색일자: 2020. 1. 7.

24) Artion 홈페이지, <https://www.artion.gr/en/tax-treatment-of-foreign-tax-residents-in-greece-retroactive-transfer-of-tax-residence/?print=print>, 검색일자: 2020. 1. 7.

25) Artion 홈페이지, <https://www.artion.gr/en/tax-treatment-of-foreign-tax-residents-in-greece-retroactive-transfer-of-tax-residence/?print=print>, 검색일자: 2020. 1. 7.

26)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억 4,893만원임

27) 2020. 1. 2.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979만원임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11호, 2019.

29)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corporate income tax (03 Dec. 2019), News IBFD



- 따라 10~25%까지 증가함³⁰⁾
- 임차인이 2020년 1월 1일자로 체결한 금융리스 약정을 위한 리스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옵션은 IFRS 또는 GAS에 따라 조정됨
- 불량채권³¹⁾은 1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채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혹은 채무불이행 예정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액이 연간 총미수금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대손상각을 통보하는 경우 상호 합의 혹은 사법적 해결에 근거한 상각액의 공제가 가능함³²⁾

■ 2020년 1월 1일부터 비상장 기업 및 유한책임회사의 자본화된 준비금에 적용되던 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해당 주식 자본의 의무 유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됨³³⁾

■ EU Directive 2003/49 에 따른 합동사업 간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 조항이 그리스 국내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³⁴⁾

3) 부가가치세³⁵⁾

■ 부동산 개발자가 건설한 신규 주택에 대해 납세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가 연기됨

- 이는 부동산 개발자의 미판매 자산의 총계에 적용되고, 매입 부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단, 양도 시 양도세는 부과됨³⁶⁾

■ 특정 물품에 대해 감면 세율이 적용됨

- 유아용품, 원동기(motor cycle)의 헬멧 및 어린이 시트 등에 13%의 감면 세율이 적용됨
- 현행 13%의 감면세율 적용 대상이던 TARIC code 3002의 인체 대상 의약품의 최고 감면세율인 6%로 하향 조정됨³⁷⁾

4) 기타³⁸⁾

■ 특별 부동산세가 면제되는 법인 유형이 추가됨

- 대체투자펀드 지침의 정의에 따라 운영되는 대체투자펀드(이하 AIF), AIF가 소유하는 회사, AIF 관리자, 유럽장기투자 펀드(ELTIF), 벤처 캐피탈 뮤추얼 펀드, 범유럽 공모형 펀드(UCITS), 유럽 벤처 캐피탈 펀드(EUVECA), 유럽 사회기업가 펀드(EUSEF)에 특별 부동산세가 면제됨

30) EY Tax Alert,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 검색일자: 2019. 12. 31.
 31) 채무자당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300유로
 32) KPMG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19/12/recent-amendments-in-greek-tax-legislation.html>, 검색일자: 2019. 12. 31.
 33) KPMG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19/12/recent-amendments-in-greek-tax-legislation.html>, 검색일자: 2019. 12. 31.
 34) EY Tax Alert,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 검색일자: 2019. 12. 31.
 35) Greece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VAT measures (29 Nov. 2019), News IBFD
 36) EY Tax Alert,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tax-alert-en-17122019/$FILE/ey-tax-alert-en-17122019.pdf), 검색일자: 2019. 12. 31.
 37) KPMG 홈페이지, <https://home.kpmg/gr/en/home/insights/2019/12/recent-amendments-in-greek-tax-legislation.html>, 검색일자: 2019. 12. 31.
 38) Greece; European Union - Tax Reform Bill submitted to parliament - real estate tax and UCITS (29 Nov. 2019), News IBFD

- 그리스 범유럽 공모형 펀드(UCITS), 부동산 투자 회사 및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 회사에 부과되던 최저한세가 폐지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스웨덴 - 강제적 보고규정 법안 공개]

- 스웨덴 정부는 2019년 12월 6일 세무조력자 등에게 조세약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 법안을 공개함³⁹⁾

- 이 법안은 납세자와 중개인 등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보고대상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EU의 강제적 보고와 역외조세약정의 정보교환 지침을 이행하는 것임

- 다만, 소급 적용으로 인해 2018년 6월 25일과 2020년 7월 1일간에 체결된 약정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 법안은 몇 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법안의 내용은 EU의 지침과 대부분 일관되게 입법되었으나, 향후 변경의 여지가 있음⁴⁰⁾

- 보고 대상의 특징(hallmarks), 보고 대상 중개

인, 보고기간 등은 모두 EU 지침과 동일하게 입법되었음

- EU 지침은 중개인을 자문사, 은행, 각종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 특징으로 낮은 조세부담, 낮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음⁴¹⁾

- 의무 위반 시 최대 31만 5천크로나⁴²⁾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자발적 이행 시 경감될 수 있음
- 현행 법안은 EU 지침과 일관되나 정부는 역외약정 이외에 국내약정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짐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룩셈부르크 - 유류세 인상안 공개]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19년 12월 16일 유류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공개함⁴³⁾

- 이 안은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기존 0.01유로에서 0.01~0.03유로로, 디젤에 대해 리터당 기존 0.02유로에서 0.03~0.05유로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상된 유류세는 2020년 2월에서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임

39) Regeringskansliet,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9/12/forslag-om-skarpta-krav-for-skatteradgivare-till-lagradet/>, 검색일자: 2019. 12. 31.

40)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ublishes-new-draft-legislation-on-mandatory-disclosure-regime>, 검색일자: 2019. 12. 31.

41)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5호, 2018을 참조

42) 원화 환산 시(124.23원/1크로나, 2019.12.31.) 약 39백만원임

43) Le gouvernement luxembourgeois, https://mfin.gouvernement.lu/fr/actualites.gouvernement%2Bfr%2Bactualites%2Btoutes_actualites%2Bcommuniques%2B2019%2B12-decembre%2B16-augmentation-accises.html, 접속일자: 2019. 12. 31.



- 이러한 유류세 인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이에 따른 EU의 세부 법령에 따른 것으로, 룩셈부르크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유류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오스트리아 - 디지털세 과세안 관보 게재]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9년 12월 4일 디지털과세안을 실행하는 법령을 관보에 게재함^{44), 45)}

- 게재된 디지털과세 집행안은 디지털과세에 대한 협력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소득신고의 온라인 제출 의무화, 온라인 디지털 절차의 설명, 온라인 광고업자의 웹 양식 이용을 위한 등록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과세안은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를 수행하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에 온라인 광고 매출액의 5%를 부과함⁴⁶⁾
- 이 과세집행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령은 이전에 공표된 디지털세의 납세협력방법

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 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납세자는 과세연도 이후 3개월 이내에 소득신고 시 온라인 광고 제공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전자시스템 등록자(FinanzOnline subscriber)인 경우 전자신고가 요구되며, 오스트리아에 외국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외국 사업자가 전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과세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온라인 디지털과세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사업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전자서비스로 디지털과세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기존 전자시스템(FinanzOnline)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임
- EU 회원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 본사,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시스템에 신고·납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44)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19_II_378/BGBLA_2019_II_378.html, 검색일자: 2019. 12. 31.

45)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taxation/Digital_Tax_Act_2020.html, 접속일자: 2019. 12. 31.

46)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https://www.ris.bka.gv.at/eli/bgbl//2019/91/20191022?ResultFunctionToken=d97c5459-51c9-492e-b7aaccd2036c2c8a&Position=1&SkipToDocumentPage=True&Abfrage=BgblAuth&Titel=&Bgblnummer=91%2f2019&SucheNachGesetzen=False&SucheNachKundmachungen=False&SucheNachVerordnungen=False&SucheNachSonstiges=False&SucheNachTeil1=False&SucheNachTeil2=False&SucheNachTeil3=False&VonDatum=01.01.2004&BisDatum=06.12.2019&ImRisSeitVonDatum=01.01.2004&ImRisSeitBisDatum=06.12.2019&ImRisSeit=Undefiniert&ResultPageSize=100&Suchworte="](https://www.ris.bka.gv.at/eli/bgbl//2019/91/20191022?ResultFunctionToken=d97c5459-51c9-492e-b7aaccd2036c2c8a&Position=1&SkipToDocumentPage=True&Abfrage=BgblAuth&Titel=&Bgblnummer=91%2f2019&SucheNachGesetzen=False&SucheNachKundmachungen=False&SucheNachVerordnungen=False&SucheNachSonstiges=False&SucheNachTeil1=False&SucheNachTeil2=False&SucheNachTeil3=False&VonDatum=01.01.2004&BisDatum=06.12.2019&ImRisSeitVonDatum=01.01.2004&ImRisSeitBisDatum=06.12.2019&ImRisSeit=Undefiniert&ResultPageSize=100&Suchworte=), 접속일자: 2019. 12. 31.

[일본 - 2020년도 세법 개정안 개요 발표]

■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2020년도 세법 개정안 개요를 발표함⁴⁷⁾

-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별도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임

■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음

- 5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투자사업에 15% 세액공제를 적용함
-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금의 25% 소득공제를 적용함
- 결혼하지 않은(이혼가정이 아닌) 편부모가정의 연간 소득이 5백만엔 이하인 경우 이혼가정 및 사별가정에 적용되는 특별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을 위한 저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여 2037년까지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중국 - 소비세법 초안 공개]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19년 12월 4일 소비세

법 초안을 공개하고 민간 공개협의를 요청함⁴⁸⁾

- 중국의 소비세는 1994년 도입된 잠정조례(Provisional Regulations)에 근거하여 과세되었으나, 중국 재무부는 입법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제정함
- 해당 법안 초안에는 23개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잠정조례의 조항 및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공고 내용이 반영되었음
-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0년 1월 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수령할 예정임

■ 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각 품목별로 세율이 달리 존재함⁴⁹⁾

- 과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 고급화장품, 귀금속, 폭죽, 유류, 오토바이, 자동차, 골프용품, 고급시계, 요트, 나무젓가락, 원목 마루, 배터리, 페인트에 해당함
- 잠정조례에 제정되지 않았으나 시행공고를 통하여 법안에 추가 반영된 품목은 배터리 및 페인트이며, 화장품은 고급화장품으로 한정하였고, 소매가액이 130만원⁵⁰⁾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에는 추가 소비세를 과세함
- 과세 대상 품목별로 1%부터 5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47) Japan - Highlights of 2020 tax reform proposals outlined (13 Dec. 2019), News IBFD

48) 중국 재무부, http://english.www.gov.cn/statecouncil/ministries/201912/03/content_WS5de6527ec6d0bcf8c4c183dc.html, 검색일자: 2020. 1. 2.

49) China (People's Rep.) - Draft Consumption Tax Law released for public consultation (04 Dec. 2019), News IBFD

50) 2020. 1. 7. 원화기준 환산 시 약 2억 2천만원임(서울외국환증개 환율 167.76/위안)



<표 1> 과세 대상 품목별 세율

과세 대상 품목	세율	비고
담배류	30~56%	대당 금액 추가 부과
주류	10~20%	톤, 그램당 금액 추가 부과
고급화장품	30%	
귀금속	5%, 10%	
폭죽	15%	
유류		리터당 금액 부과
오토바이	3%, 10%	
자동차	1~40%	고급자동차의 경우 10%의 소비세 추가 부과
골프용품	10%	
고급시계	20%	
요트	10%	
나무젓가락	5%	
원목 마루	5%	
배터리	4%	
페인트	4%	

출처: News IBFD, China (People's Rep.) - Draft Consumption Tax Law released for public consultatio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 소비세 잠정조례, http://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2806&AST_SEQ=53&searchNtnl=CN&searchLgslCode=, 검색일자: 2020. 1. 7.

- 과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품목별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여야 하며, 품목별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율이 다른 품목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품목의 소비세는 납부 대상 소비세에서 공제 가능함
 - 예를 들어, 담배 제품 생산에 사용된 시가 등의 소비세나, 가솔린 또는 디젤 오일 생산에 사용된

석유 등의 소비세는 생산품의 소비세에서 공제 가능함

- 과세 대상 품목의 수출은 정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소비세는 과세관청이 징수하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관세청이 징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인도네시아 - 해외 디지털기업 과세제도 도입]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환경에 중대한 경제적 실질(significant presence)이 존재하는 해외 기업들에 인도네시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규정을 도입함⁵¹⁾
 - 온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물리적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인도네시아 내 국 세법에 준하여 세금을 부과함
-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일정 기준의 거래횟수를 초과함
 - 일정 기준의 거래가액을 초과함

51) Indonesia - Taxation of foreign digital companies - regulation issued (05 Dec. 2019), News IBFD

- 일정 기준의 배송 포장 패키지 수를 초과함
- 일정 기준의 트래픽을 초과함

■ 해당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적용됨

-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디지털기업에는 적용 시점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둠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OECD - BEPS 프로젝트 Action 5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9년 12월 23일 유해조세관행 (Harmful Tax Practice)에 관한 상호검토 보고서를 공개함⁵²⁾

-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Harmful Tax Practices - 2018 Peer Review Reports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f Tax Rulings”임
-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사항⁵³⁾ 중, 투명성 개선을 위한 ‘예규(tax rulings) 정보의 자발적 교환 의무화(compulsory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의 이행 상황을 살핌

- BEPS 프로젝트 Action 5에서 규정하는 자발적 교환 대상 예규는 다음 5가지임
 - 특정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regime) 관련 예규
 -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unilateral APA) 및 이전가격 관련 역외거래 예규
 -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국제거래 관련 예규
 - 고정사업장 관련 예규
 - 특수관계인 및 도관(conduit)에 대한 예규
- 상호검토 대상 국가는 112개국이며,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을 대상 기간으로 함

■ 위 보고서에 따르면, Action 5 예규교환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국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음⁵⁴⁾

- 2018년 말까지 보고된 교환 대상 예규는 1만 8천 건 이상이며, 위 예규들을 대상으로 약 3만회의 예규교환이 이루어졌음
- 이 중 2018년에 발생한 예규교환건은 약 9천 건 내외임
- 조사 대상국 중 68개국은 Action 5의 권고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추가 권고사항을 받지 않았음

52) OECD, http://www.oecd.org/tax/beps/harmful-tax-practices-2018-peer-review-reports-on-the-exchange-of-information-on-tax-rulings-7cc5b1a2-en.htm?utm_source=Aed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Harmful%20Tax%20Practices%20E2%80%93202018%20Peer%20Review%20Reports%20on%20the%20Exchange%20of%20Information%20on%20Tax%20Rulings&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12-2019&utm_term=demo, 검색일자: 2020. 1. 2.

53) BEPS 프로젝트 Action 5 보고서는, ① 실질적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연구활동과 조세특혜제도를 연결시켜(연계접근법) 실질적 활동 요건을 갖춘 특혜제도만을 허용하고,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납세자(또는 납세자가 속한 그룹)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예규 중 소득 이전과 세원잠식의 우려가 있는 예규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예규를 의무적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해조세 환경에 대한 대응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9., pp. 3~6).

54) News IBFD, “OECD - BEPS Action 5: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rulings marks substantial progress”, 2019. 12.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24_o2_1.html, 검색일자: 2020. 1. 2.



-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교환의 적시성, 지식 재산권 소득에 적용되는 조세특혜제도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 52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
 - 2017년도 평가에서는 92개국에 대하여 60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는데, 금번 2018년도 평가에서는 60개 중 21개의 권고사항이 채택·도입되어 해결되었음
- 우리나라는 Action 5 관련 평가 기준(Terms of Reference)을 모두 충족하였고 2017년도 평가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OECD로부터 별도의 권고사항을 제시받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33개국과 총 180건의 예규교환을 하였음
 - 우리나라가 교환한 예규는 주로 국제거래에서의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와 이전가격 관련 사전답변 예규(advance tax ruling)임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OECD - BEPS 프로젝트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9년 11월 28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BEPS 프로젝트 Action 14 관련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⁵⁵⁾
 - BEPS 프로젝트 Action 14는 최소 기준 이행과 제로서, OECD는 프로젝트 참여국을 10개의 조로 나누어 ① 최소 기준 이행 여부 및 ②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의 2단계의 상호 검토를 진행함⁵⁶⁾
 - Action 14 권고사항은 총 23가지이며 크게 3개의 범주로 분류됨⁵⁷⁾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관련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과 조세조약 분쟁의 적기 해결 보장
 - 조세조약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 개선
 - 조세조약상 적격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절차 접근성 보장
 - 본 국가별 Action 14 보고서는 10개 조 중 7번째 조를 대상으로 한 상호검토 보고서로서, 위 상호검토 대상국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호합의 절차 관련 통계 통합 자료를 담고 있음

55)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peer-review-reports-on-dispute-resolution-for-brazil-bulgaria-china-hong-kong-china-indonesia-russia-and-saudi-arabia.htm>, 검색일자: 2019. 12. 23.

News IBFD, "OECD publishes seventh round of BEPS Action 14 Stage 1 peer review reports". 2019.11.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1-28_o2_1.html, 검색일자: 2019. 12. 23.

56) 각 조별 상호검토 일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oecd.org/tax/beps/beps-action-14-peer-review-assessment-schedule.pdf>, 검색일자: 2019. 12. 23.

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쟁해결 방안의 효과성 제고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의 입법동향」, 2016. 9, pp. 3~7.

■ 상호검토 대상 7개국 중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는 Action 14의 최소 기준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⁵⁸⁾

- 러시아는 Action 14 권고사항의 절반 정도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반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 분쟁 방지, 상호합의 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상호합의 절차 사건의 종결 등을 중점으로 평가되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EU - EU경제재정이사회 Tax Issue 보고서 발표]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9년 12월 9일 최근 조세 이슈에 관한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보고서를 발표함⁵⁹⁾

- 본 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 동안 EU 차원에서의 각 분야별 조세제도 발전 및 논의 현황을 살펴

■ 직접세 관련 부분으로는 공통(연결)법인세기준, 디지털 과세 패키지, 유해 조세특혜제도 해결을 위한 행동 지침 관련 진척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음⁶⁰⁾

-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⁶¹⁾
 - 도관 기업 취급방법, 이전가격 조항 구비 필요성 등 CCCTB의 특정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임
 - 최근 진행 중인 OECD의 국제조세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OECD에 CCCTB의 진행 경과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다만, 2019년 7월 유럽연합 High Level Working Party on Tax Questions회의에서는 현재 OECD의 논의를 CCCTB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의가 있었음
- 디지털 과세 패키지(Digital taxation package)
 - 유럽연합이사회는 OECD의 디지털 과세방안을 재고하고 있으며,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세방안들이 EU 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

5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oecd-releases-seventh-batch-of-peer-review-reports-on-beps-action-14>, 검색일자: 2020. 1. 2.

59)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863-2019-IN17/en/pdf>, 검색일자: 2019. 12. 23.

60) News IBFD, European Union - ECOFIN Report on tax issues published - direct tax developments, 2019.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12_e2_1.html, 검색일자: 2019. 1. 3.

61) 공통법인세기준(CCTB)과 공통연결법인세기준(CCCTB)은, CCCTB에서만 발생하는 국제적 손익의 연결과정과 그룹 간 거래의 소멸과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위 공통(연결)법인세기준은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와 함께 법인세 패키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발표된 것으로, ATAD가 최소 기준의 지침이라면, CCTB 및 CCCTB 관련 내용은 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함. PwC,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global_tax_update/samilpwc_global-tax-update_dec2016.pdf, 검색일자: 2019. 1. 3.

62) EU 회원국 간 단일한 과세기준 산정방식(single EU system)을 사용하여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 EU 내에서의 납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함. 회원국 간 상이한 법인세 체제로 인한 기업의 납세비용,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 과세 기준만 통일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조세주권에는 영향이 없음. 주벨기에대사관 2016. 10. 26자 작성 자료 참조.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26029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19. 12. 23.



분석 중임

- 특히 OECD 논의의 특정 요소들은 EU 회원국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EU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함

- 기업 과세 관련 행동 지침 그룹(Code of Conduct Group)

- EU 회원국들의 유해 조세특혜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EU 차원의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국외원천소득면제, 명목이자비용공제(nominal interest deduction) 등 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기로 함

- 간접세 관련 부분으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⁶³⁾

- EU 차원의 단일 부가가치시스템(definitive VAT system) 마련

- 유럽위원회(EC)는 2017년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기반한 EU 차원

의 단일 부가가치시스템의 핵심 개념들[이른바 ‘단기시정조치(quick fixes)’]⁶⁴⁾을 제시하고, 2018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원칙들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대부분 회원국들은 위 단일 부가가치시스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적격 납세자(certificated taxable person) 개념 도입 및 역내거래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recapitulative statement) 제도 폐지를 모두 반대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유럽 위원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을 위한 대안적 보고 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요청함

-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

- 유럽 위원회는 2018년 초, 인화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유럽 전역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함
- 위 제안은 기존 부가가치세율 설정 규정(EU 부가세지침 제98조)을 개정하고, 회원국들에 일정 범위 내의 세율 설정 재량을 허용하며,

63) News IBFD, European Union - ECOFIN Report on tax issues published - indirect tax developments, 2019.12.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10_e2_1.html, 검색일자: 2019. 1. 3.

64) EU 집행위원회는 납세실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재무건전성 등을 표준으로 하는 모범납세자(Certified Taxable Person)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이들에게만 아래 조치(quick fixes)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타 회원국 내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동 회원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VAT 규정을 단순화하여 적용
- 물품이 중간구매자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에 대해서도 VAT 규정을 단순화하여 적용
- 판매물품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배송되었음을 거래자들이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단일한 규정(harmonized and uniform rules) 마련
- 현행 규정에서 VAT 면제를 위해서는 배송증명서 외에도 EU사업자번호인증시스템(VIES)에 등록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료화(Clarify)

주별기예대사관 2017. 10. 6자 작성자료 참조.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2/view.do?seq=13319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 검색일자: 2019. 1. 3.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회원국들은 EU 차원 단일 부가가치시스템과의 연계, 회원국들의 인하 부가가치세율 관련 내용을 다룬 웹 포털 사이트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물품세와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는 2018년 소비세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규모 기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 역내 소비재 이동 거래 내역을 보다 전산화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의장국(핀란드),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대한 협상안 발표(2019. 12. 2.)¹⁾

● (배경)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5월에 EU의 장기 지출계획인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MFF)안을 발표²⁾하였으며 이후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

-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의장국인 핀란드에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의 규모에 대한 협상안³⁾을 12월 정상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규모) 7년 기간 동안 약 1조 870억유로[EU(영국 제외 27개국) GNI의 약 1.07%]

* 이는 2018년 가격으로 표시된 금액이며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고려한 것임. 또한 MFF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기금을 제외한 수치임

- 집행위가 제시한 1조 1,345억유로(EU GNI 대비 약 1.11%) 대비 감소

● (주요 내용) 예산은 기후 변화 대응, 연구 및 혁신, 이민 관리 등 EU의 새로운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춤

신, 이민 관리 등 EU의 새로운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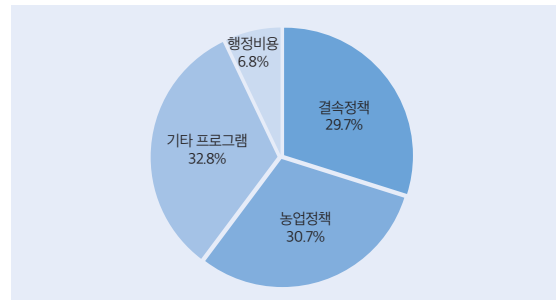
- 결속 정책(지역 개발)에 3,230억유로, 농업 지원 및 개발에 3,340억유로, 신규 우선순위를 포함한 EU의 기타 프로그램에 3,560억유로를 배정

- 총예산의 최소 25% 이상을 기후 변화 대응에 활용

• 기후 변화 관련 조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남(농업정책 자금의 40%와 결속정책에 배정된 자금의 30%)

- 이 외에도 협상안에는 건전한 EU 예산 집행 확보를 위한 수단 도입,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Just Transition Fund 도입에 대한 언급 등도 포함됨

[그림 1] 2021~2027 다년도 재정체계 협상안



자료: Finland'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의 보도자료(2019. 12. 5)

1) Finland'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Finnish Presidency proposes greater EU investment i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2019. 12. 5. https://eu2019.fi/en/article/-/asset_publisher/suomi-esittaa-puheenjohtajamaana-eu-lle-lisapanostusta-kestavan-tulevaisuuden-rakentamiseen
 Council of the EU,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2021-2027: Negotiating Box with figures, 2019. 12. 5.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1632/mff-negotiating-box_presidency.pdf
 Finland'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Tytti Tuppurainen: Future EU needs a modern financial framework, 2019. 12. 5. https://eu2019.fi/en/article/-/asset_publisher/eu-tarvitsee-modernin-rahoituskehysten-joka-vastaa-tulevaisuuden-haasteisiin

2) 집행위가 제시한 다년도 재정체계 초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상반기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3) 협상안(negotiation box)은 EU 정상 간 원활한 논의를 위해 협상 옵션의 명확화·단순화를 목적으로 함

- (향후 절차) 협상안을 바탕으로 12월 정상회의 (12월 12~13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EU 이사회,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대한 안정성장 협약(SGP) 관련 권고·결정 발표(2019. 12. 3.)⁴⁾

- (주요 경과) 헝가리는 2017년, 루마니아는 2016년부터 중기재정목표(MTO)(또는 중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 경로)와의 상당한 편차가 발생해 '심각한 위반 시정 절차(Significant Deviation Procedures: SDP)⁵⁾가 개시된 바 있음⁶⁾
- (결정 사항) 이사회는 중기재정목표(MTO)와의 상당한 편차를 시정하도록 한 이사회의 권고 (2019. 6. 14.)*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효과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함
*헝가리는 명목 지출 증가율⁷⁾이 2019년 3.3%, 2020년 4.7%, 루마니아는 2019년 4.5%, 2020년 5.1%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 이행을 권고한 바 있음
- (권고 사항)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2020년 명목 지출 증가율이 각각 4.7%, 4.4%(각각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연간 조정 수준 0.75%와

1.0%에 상응)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비정기적 이익을 활용하고, 성장 친화적 방식으로 지속적인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이루어야 함
-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2020년 4월 15일까지 권고에 따른 이행 조치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EU 통계청,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9. 12. 5.)⁹⁾

- 2019년 3분기의 직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0.2%, EU 28개국은 0.3%를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1.2%, EU 28개국은 1.4%를 기록
- (국가별 경제성장률) EU 회원국의 2019년 3분기의 직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폴란드(1.3%), 헝가리(1.1%), 에스토니아(1.0%)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각각 0.1%)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

4) Council of the EU, COUNCIL DECISION establishing that no effective action has been taken by Hungary in response to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14 June 2019, 2019. 12. 3.
Council of the EU, COUNCIL RECOMMENDATION with a view to correcting the significant observed deviation from the adjustment path towards the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in Hungary, 2019. 12. 3.
Council of the EU, COUNCIL DECISION establishing that no effective action has been taken ,by Romania in response to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14 June 2019, 2019. 12. 3.
Council of the EU, COUNCIL RECOMMENDATION with a view to correcting the significant observed deviation from the adjustment path towards the medium-term budgetary objective in Romania, 2019. 12. 3.

5) 초과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재정목표(MTO)와의 편차를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조적 재정수지와 지출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 여부를 판단함

6)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8년 하반기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7) 총정부지출에서 이자지출, EU 자금의 수입과 완전히 매칭되는 EU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실업급여 지출의 비례량적 변화를 제외한 순기초정부지출(net primary government expenditure)의 증가율임

8) 이는 각각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연간 조정 수준 1.0%(2019년), 0.75%(2020년)에 상응함

9) Eurostat,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ird quarter 2019, 2019. 12. 5.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0081871/2-05122019-AP-EN.PDF/ca0d3450-07e5-082b-f7bc-4486502c285a>



- (지출항목별 증가율) 2019년 3분기 유로지역에서 가계 최종소비지출 0.5%, 정부 최종소비지출 0.4%, 총고정자본형성 0.3%, 수출 0.4%, 수입은 0.6% 직전 분기 대비 증가
- EU는 가계 최종소비지출 0.5%, 정부 최종소비지출 0.4%, 총고정자본형성 0.3%, 수출 1.0%, 수입은 0.7% 직전 분기 대비 증가

- * 2016년 12월 12일 코트디부아르는 총 6억 5,040만 SDR(코트디부아르 쿼터의 100%, 약 8억 9,670만 달러)을 지원하는 3년간의 ECF/EFF 협정을 맺음
- 6차 검토를 완료하면 9,678만SDR¹³⁾(약 1억 3,340만달러)을 즉시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약정에 따른 총지출액은 6억 5,040만SDR(약 8억 9,670만달러)에 이르게 됨
- 또한, 2020년 말까지 IMF 지원을 연장하고, 8억 4,397만SDR(약 111억 6,360만달러 또는 코트디부아르 쿼터의 129.8%)에 대한 접근권 확대 요청을 승인



IMF

- IMF 집행위원회, 코트디부아르 6차 검토 완료 및 프로그램 연장 승인(2019. 12. 6.)¹⁰⁾
- IMF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 ECF(Extended Credit Facility)¹¹⁾ 및 EFF(Extended Fund Facility)¹²⁾ 지원에 따른 6차 검토를 완료

- (전망)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성장률은 2019-2020년에 약 7.5%로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2019년 GDP의 3%인 WAEMU 지역 기준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됨
- 중기 성장 전망은 견고하며,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하여 금융부문 개혁을 촉진하고,

<표 1> 2019년 3분기 GDP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

구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EU(28개국)	유로지역	EU(28개국)
가계최종소비지출	0.5	0.5	1.5	1.6
정부최종소비지출	0.4	0.4	1.7	2.1
총고정자본형성	0.3	0.3	8.1	6.6
수출	0.4	1.0	2.4	2.5
수입	0.6	0.7	5.0	4.2
GDP	0.2	0.3	1.2	1.4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ird quarter 2019, 2019. 12. 5.

1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9/12/06/pr19444-cote-divoire-imfexecboard-cmplt-rev-ecf-eff-arrange-cote-divoire-approve-1yr-prgrm-ext>

11) ECF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제공됨

12) EFF는 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겪고 있거나 ② 성장이 느리고 내재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가진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

13) IMF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IMF 가맹국이 규약에 정해진 일정 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스탠다드 바스켓(standard basket) 방식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5대 통화 바스켓으로 매일 변화하는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당일의 외국환시장 비율(rate)에 상응한 달러로 환산, 이것으로부터 역산하여 각국 통화표시의 SDR 가치를 정함

<표 2> EU 28개국의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변화)

국가	직전 분기 대비 변화율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18	2019			2018	2019		
	Q4	Q1	Q2	Q3	Q4	Q1	Q2	Q3
벨기에	0.8	0.0	0.3	0.4	1.5	1.3	1.3	1.6
불가리아	0.9	1.1	0.9	0.8	3.4	3.9	3.8	3.7
체코	0.9	0.6	0.6	0.4	2.7	2.7	2.7	2.5
덴마크	0.8	0.0	1.1	0.3	3.0	1.8	2.5	2.2
독일	0.2	0.5	-0.2	0.1	0.6	1.0	0.3	0.5
에스토니아	1.2	1.0	0.8	1.0	5.0	4.7	4.2	4.1
아일랜드	0.5	2.7	0.7	-	3.8	7.2	6.0	-
그리스	0.0	0.4	1.3	0.6	1.	1.4	2.8	2.3
스페인	0.6	0.5	0.4	0.4	2.1	2.2	2.0	2.0
프랑스	0.4	0.3	0.3	0.3	1.2	1.3	1.4	1.4
크로아티아	0.3	1.2	0.5	0.8	2.5	4.0	2.4	2.8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0	0.1	0.3
키프로스	0.2	1.4	0.7	0.7	3.5	3.3	3.1	3.0
라트비아	0.7	-0.3	0.8	0.7	5.3	3.1	2.5	1.9
리투아니아	1.3	1.2	0.9	0.2	3.8	4.3	4.0	3.6
룩셈부르크	0.0	1.1	2.2	-	1.2	1.0	3.7	-
헝가리	1.1	1.4	1.1	1.1	5.1	5.2	5.2	4.8
몰타	-0.1	0.0	1.3	-	7.1	5.2	4.0	-
네덜란드 ¹⁾	0.5	0.4	0.4	0.4	2.0	1.9	1.6	1.7
오스트리아	0.7	0.5	0.1	0.1	2.2	1.9	1.7	1.5
폴란드	0.4	1.5	0.8	1.3	4.5	4.7	4.1	4.1
포르투갈	0.4	0.6	0.6	0.3	2.0	2.1	1.9	1.9
루마니아	0.8	1.0	0.8	0.6	4.1	4.9	4.3	3.2
슬로베니아	0.6	0.6	0.0	0.8	3.2	3.5	2.3	2.0
슬로바키아 ²⁾	0.5	0.6	0.3	0.4	3.6	3.3	2.4	1.8
핀란드	0.0	0.6	0.8	0.7	0.5	0.6	1.4	2.2
스웨덴	1.2	0.0	0.2	0.3	2.1	1.4	1.0	1.7
영국	0.3	0.6	-0.2	0.3	1.5	2.1	1.3	1.0
EA19	0.3	0.4	0.2	0.2	1.2	1.4	1.2	1.2
EU28	0.4	0.5	0.2	0.3	1.5	1.7	1.4	1.4

주: 1) 캘린더 효과 조정 자료로부터 계산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

2) 슬로바키아는 계절조정에 캘린더 효과 조정을 포함하지 않음

출처: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ird quarter 2019, 2019. 12. 5.



민간부문 주도의 포괄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평가) 코트디부아르는 개발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를 추구해 왔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MF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부문이 성장을 견

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정책 제언) 2019년과 2020년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기 위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중한

<표 3> 코트디부아르 주요 경제지표(2016~2021)

(단위: %)

구분	실적			추정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nnual percentage changes, unless otherwise indicated)						
National income						
GDP at constant prices	8.0	7.7	7.4	7.5	7.3	7.0
GDP deflator	-1.1	-1.7	0.4	1.0	1.7	1.7
Consumer price index (annual average)	0.7	0.7	0.	1.0	2.0	2.0
Central government operations						
Total revenue and grants	6.9	8.0	5.3	10.4	8.6	8.4
Total expenditure	12.8	9.5	3.4	6	8.7	8.2
Money and credit						
Money and quasi-money (M2)	10.1	8.8	13.5	11.6	7.3	10.7
Credit to the economy	13.3	15.2	11.3	11.6	13	13
(Percent of GDP unless otherwise indicated)						
Central government operations						
Total revenue and grants	20.0	20.4	19.9	20.3	20.2	20.1
Total revenue	18.6	19.2	18.9	19.1	19.0	19.1
Total expenditure	24.1	24.9	23.9	23.3	23.2	23.1
Overall balance, incl. grants, payment order basis	-4.1	-4.5	-4.0	-3.0	-3.0	-3.0
Gross investment						
Central government	7.4	7.5	7.1	6.7	7.0	7.4
Nongovernment sector	10.3	12	13.7	15.3	16	16.5
Gross domestic saving						
Central government	2.1	2.0	2.4	3.1	3.5	4.0
Nongovernment sector	18.2	20.2	18.9	20.1	20.9	21.5
Public sector debt						
Central government debt, gross	48.4	49.8	53.2	52.6	49.9	48.5
Central government debt (excluding C2D)	43.1	45.3	49.7	50	48.1	46.9
External debt	29.0	30.5	36.5	37.7	37.2	36.9
External debt (excluding C2D)	23.4	25.4	32.5	34.7	35.0	35.0
Memorandum items:						
Nominal GDP (CFAF billions)	20,931	22,151	23,900	25,956	28,309	30,788

주: 코트디부아르 당국 및 IMF 추정치

출처: IMF, Côte d'Ivoire: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2016~2021

채무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은행부문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은행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AML/CFT) 프레임워크와 그 구현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중요
- 에너지 부문, 인적 자본 및 금융 부문의 개선, 디지털화 가속, 사회 안전망 적용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민간부문 활동과 포괄적 성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급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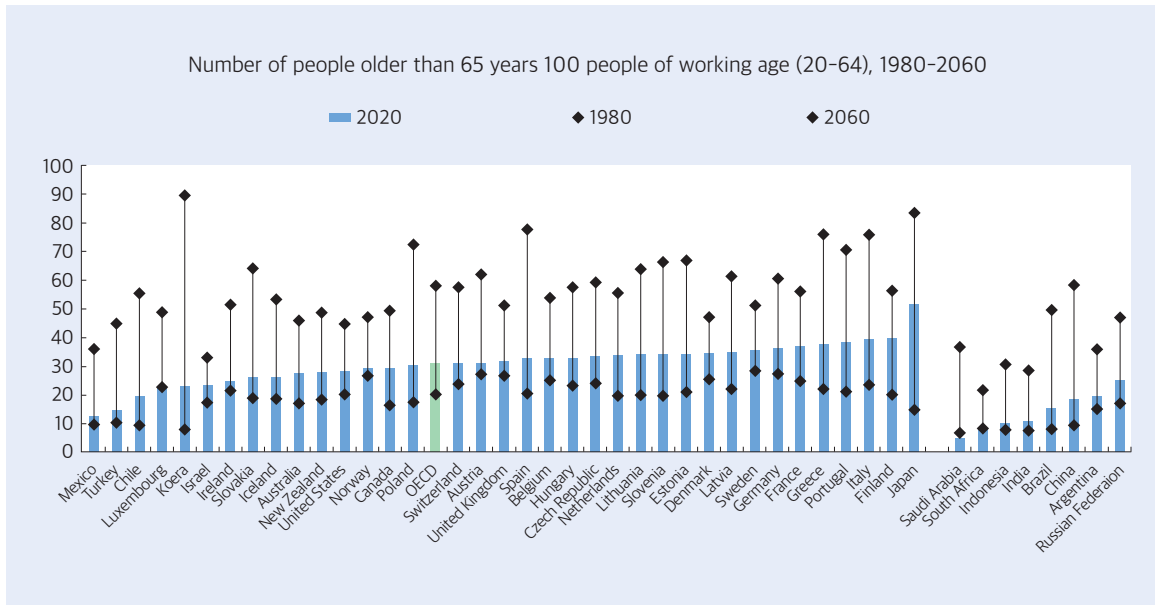
■ 「Pension at a Glance 2019」 보고서 발표(2019. 11. 27.)¹⁴⁾

* 이 보고서는 2017-2019년 OECD 국가에서 제정된 연금정책들을 검토하고 분석함. 이전 호와 마찬가지로 OECD 및 G20 국가의 종합적인 연금정책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함. 아래 내용은 보고서의 Chap1 도입 내용임

- OECD 회원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력은 고조됨

[그림 2] 근로연령 100명당 65세 인구 변화

(단위: %)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Pension at a Glance 2019; Figure 1.2.

14) OECD, Pension at a Glance, 2019. 11. 27.

<http://www.oecd.org/pensions/public-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



- 1980년 근로연령(20~64세) 10명당 65세 인구는 2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거의 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의 기여(contribution) 강화가 필요
- 연금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간 연장이 필요
-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연금개혁은 연금수급 연령 요건 완화, 기초연금(first-tier pensions)을 포함한 연금 증가, 적용 범위 확대, 사적연금 장려에 중점을 둬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개혁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커지고 있기에 최근 주요정책은 이전에 채택한 개혁을 반복함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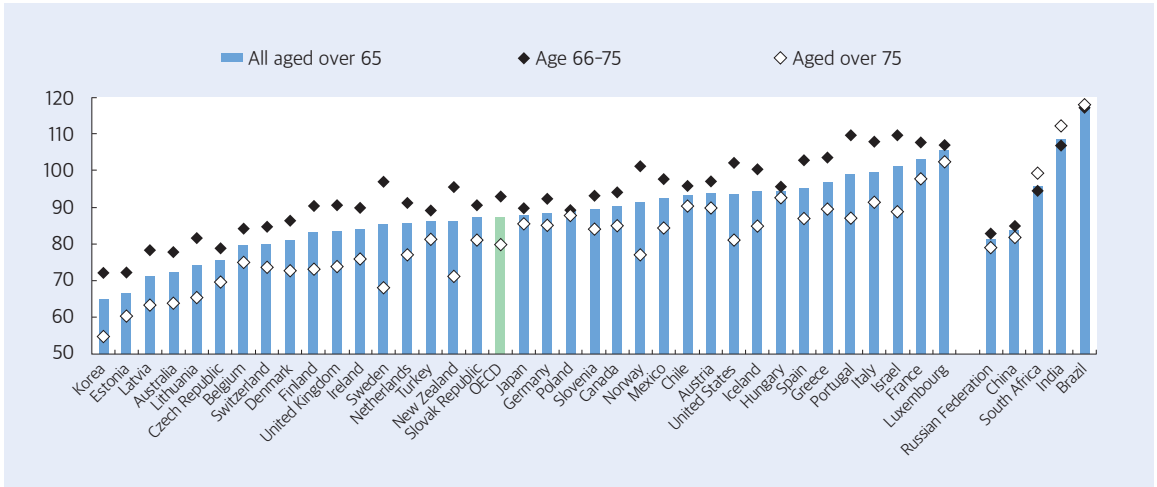
- (노인의 상대적 소득) OECD 평균 65세 이상의 평균 소득은 전체 소득의 87% 정도
 -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70% 미만이지만, 이스라엘,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100% 이상을 받음
- (노년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13.5%로 OECD 전체 인구 평균 빈곤율 11.8%보다 약간 높음

-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및 네덜란드의 노년 빈곤율은 4% 미만이며 호주,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및 미국은 20% 이상
- (은퇴연령 상황)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은 은퇴연령을 높일 계획
 - OECD 국가의 공식 은퇴연령 평균(남성)은 현재 64.2세에서 2060년 66.1세로 1.9세 증가할 전망이며, 이 수치는 65세 기대수명 증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 (공식 은퇴연령) 입법화 조치를 고려했을 때,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이 연금수급이 가능한 공식 은퇴연령은 62세¹⁵⁾에서 71세¹⁶⁾ 이상이 될 전망
 - 2018년 현재의 공식 은퇴연령¹⁷⁾은 터키는 51세(남성),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67세(남·여)임
- (소득대체율) 평균 임금을 받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미래 순 소득대체율은 59%임
 - 완전경력 평균 임금 근로자의 의무연금 순 대체율은 30%(리투아니아, 멕시코, 영국)부터 90%(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 이상까지 다양함
 - 자발적 사적 연금(voluntary pension) 비중이 큰 OECD 8개국¹⁸⁾의 경우 의무 대체율만 포함했을 때보다 사전연금까지 고려하면 순 소득대체율은 26%p 높음

15)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
 16)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17) 22세부터 정식 경력을 쌓은 후 전액 연금 수급연령
 18) 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그림 3] 노인의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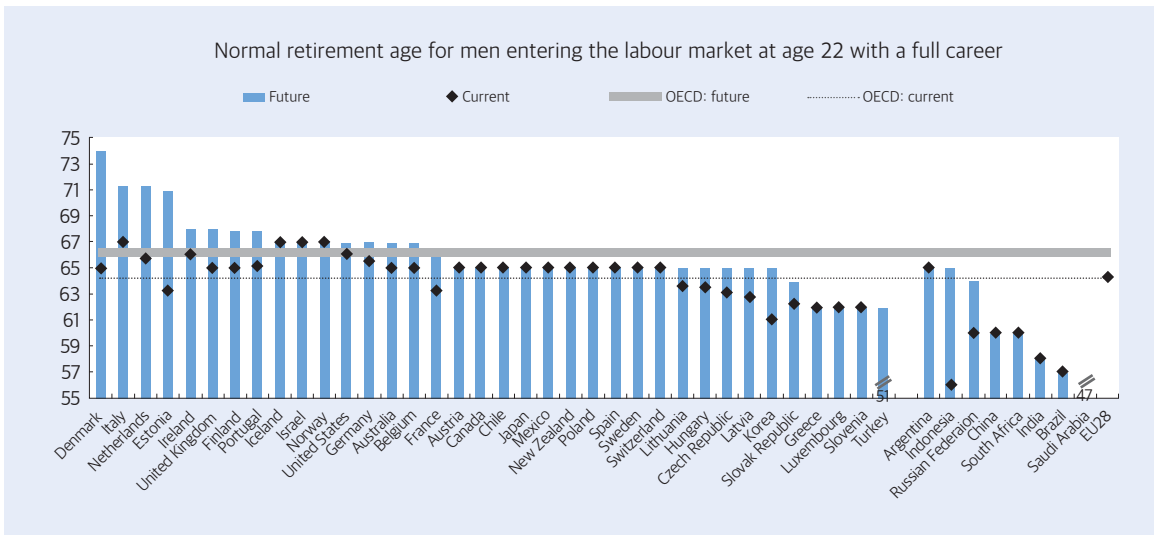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소득 중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비율
출처: Pension at a Glance 2019; Figure 1.5.

[그림 4] OECD 국가의 공식 은퇴연령 상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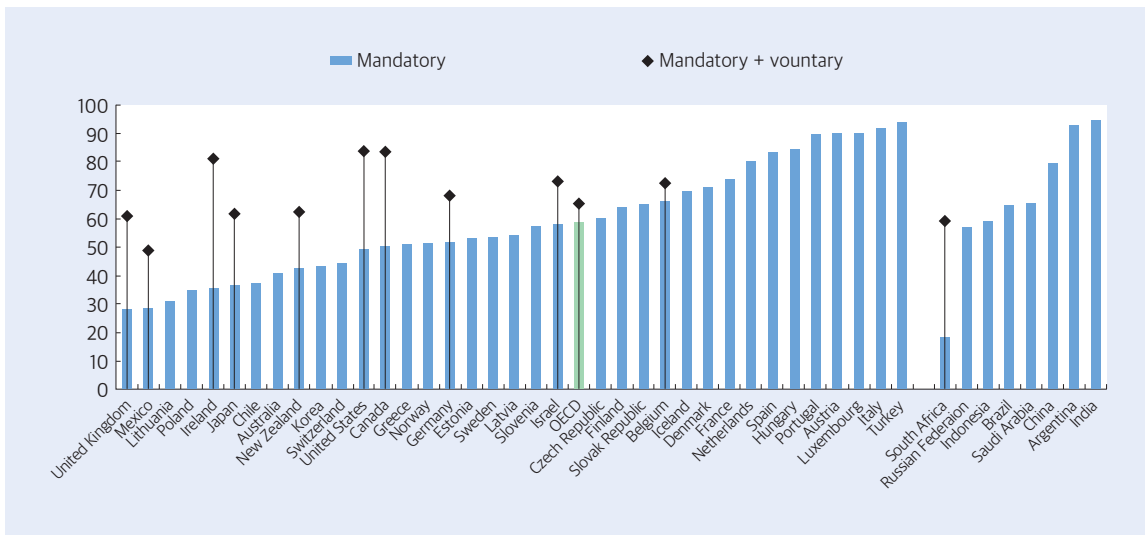


주: 1. 공식 은퇴연령은 2018년 22세 완전경력자를 갖춘 남성으로 계산함
2. Future(미래)는 2018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가정된 근로자가 모든 의무연금의 퇴직급여 전액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임. 이 연령은 국가마다 다름
3. 이탈리아의 현재 은퇴연령은 2019년에 도입된 "quota 100"이 반영된 것은 아님
출처: Pension at a Glance 2019; Figure 1.10.



[그림 5] 완전경력 평균 임금 근로자의 미래 순 연금대체율

(단위: %)



주: OECD 연금모형에 근거해 계산22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완전경력 후 은퇴한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을 계산에 사용
출처: Pension at a Glance 2019; Figure 1.13.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하원, ‘The Sustainable Budget Act’ 법안(H.R. 5211) 발의(2019. 11. 21.)¹⁹⁾

- 동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으로서, 위원회 설립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기초재정수지 균형(primary budget balance)을 달성하고자 함

* (공동 발의자) 에드 케이스(Ed Case) 민주당 하원의원, 예산위원회 소수당(공화당) 대표²⁰⁾ 스티브 워맥(Steve Womack) 의원

-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 및 활동시기, 보고서 발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

- (역할) 위원회는 구성원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중기재정 상황 개선을 통한 기초재정수지 균형 도달 및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의 의무가 주어짐

* 위원회 명칭은 국가 재정책임 및 개혁 위원회(NCFRR,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로 함

- (구성) 위원회는 총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4명 이상이 찬성하는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에게도 공표됨

※ 향후 설립되는 위원회는 CBO(의회예산처), 합동 조세위원회(JCT²¹⁾, GAO(감사원)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9) CRFB, <http://www.crfb.org/blogs/case-and-womack-introduce-sustainable-budget-act>

20) ranking member

21)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현황) 동 법안은 하원에 발의된 당일 규칙위원회(committee on rules)와 예산위원회에 이송되었음

■ 미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과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청문회(testimony) 주요 내용 발표(2019. 12. 6.)²²⁾

- 이번 청문회는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2012년 이후로 처음 마련된 연준 의장의 예산위원회 발언 자리로서, 경제, 통화정책 및 연방재정 등 4가지 주요 시사점을 발표

※ 미국은 11년째 경기확장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무역 분쟁(trade tensions)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전망 상황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음

- (노동시장) 2015년 이래 핵심노동연령층(prime working years, 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기타 주요 비교 국가에 비하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비판
 - 실업률은 경기침체기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온 하였으나, 물가상승 압박이 크지 않기에 완전 고용시장에 근접해 있을 것이라는 의견 개진
- (재정정책) 현재 낮은 이자율 상황에서 향후 경기 하강기의 재정정책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의회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피력
 - 자동안정화 장치 및 재량지출 등은 경기 하강기에 주요 재정정책 도구로 쓰였으며, 향후 경기 침체 시에 연준의 이자율 하향 조정 및 자산 매입 등과 같은 정책이 가능한 상황

에서도 경기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의 영향력은 강력함

- 향후 경기침체 발생 시 재정 여력이 있긴 하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증가로 의회의 경제대응 의지를 제한(less willing)할 수 있기에 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회귀가 중요함(critical)을 언급
- (연방채무) 연방채무 관련한 명확한 변곡점(tipping point)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높은 채무 수치 및 채무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험이 있기에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점진적 회귀를 위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함
 - 급격한 지출 삭감은 지혜롭지 못한(unwise) 정책이며, 채무를 청산하거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예산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도 없음 → 다만, 경제가 채무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하지 못한 재정의 주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보건 지출을 꼽았으며, GDP 대비 17%를 차지하는 보건지출로 인해 좋은 보건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출의 절반 이상이 불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있음을 언급함
- (기타)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 및 불평등 또한 미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 언급하면서, 경제 발전의 가치가 모든 소득분포 대상에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제안

22) 미 하원 예산위원회,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economic-outlook-view-fed>



- 노동 참여와 생산성은 장기적인 경제 상승의 주요 요소이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장기 잠재성장도 약화되고 있음

[기타]

■ 미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²³⁾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가지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 발표(2019. 12. 10.)²⁴⁾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내년에 치러지는 46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민주당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
 - 이후, 하원 의장의 청문회 개시 발표(9.24.)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절차 착수²⁵⁾
- (탄핵 소추안 내용)²⁶⁾ ① 권한 남용(abuse of power) ②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 (권한 남용) 대통령이란 공직을 국가 이익을 무시한 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
 - (의회 방해)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
- (현황) 탄핵 여론은 현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측

- 과 공화당 양측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
- (민주당 입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cornerstone)이자 법규의 기본(foundational)으로서 다음 선거의 공정성(integrity)이 위기에 놓여 있음
- (트럼프 입장) 탄핵조사(impeachment inquiry) 절차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미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19 제2사분기 예산 사용상황²⁷⁾ 발표 (2019. 12. 6.)²⁸⁾

- FY2019 제2사분기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 금액은 17조 2,362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2조 3,753억엔으로, 세출금액이 세입금액을 5조 1,391억엔 초과
 - FY2019 제2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16.9%,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0%를 기록
 - 2사분기까지의 누계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3) House Judiciary Committee

24) 미 하원 법사위원회, <https://judiciary.house.gov/news/press-releases/chairman-nadler-announces-introduction-articles-impeachment-against-president>

25) 미 하원 정보위원회, <https://intelligenc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685>

26) 미 하원 정보위원회, <https://intelligenc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890>

27) 예산 사용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 수납 상황 및 소관 조직(項)별 지출 상황과 특별회계의 수지(収支) 상황에 대한 각 부처의 월별 보고를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임

28) 재무성, 『令和元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9. 12. 6., https://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19/01_2gai.html

면,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1.5%,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47.4%
 -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수입 비율은

2.7%p, 지출 비율은 0.6%p 감소한 수치임
 • FY2019 제2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18.9%,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4.0%를 기록

<표 4> FY2019 제 2사분기 예산 사용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014,570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²⁾ (D)	1,065,337	세입예산액(A)	3,925,935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D)	3,939,784
제2사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72,362	제2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23,753	제2사분기 국가 수납 금액(B)	744,551	제2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946,95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6.9 (17.6)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0 (18.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8.9 (17.9)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4.0 (23.9)
제2사분기까지 누계(C)	319,706	제2사분기 까지 누계(F)	505,168	제2사분기까지 누계(C)	2,246,185	제2사분기 까지 누계(F)	2,189,022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1.5 (34.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47.4 (48.0)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7.2 (55.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55.5 (55.6)

주: 1) () 안은 전년 동기 비율

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 등을 증감시킨 금액을 의미

출처: 재무성, 「令和元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9. 12. 6.



[기타]

■ 내각부, 2019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19. 12. 9.)^{29), 30)}

- 2019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기준,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연율1.8%), 명목 GDP 성장률은 0.6%(연율 2.4%)로, 실질성장률이 1차 속보치(실질 0.1%, 명목 0.3%) 대비 상향 조정되었음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 수요 기여도는 0.6%로 4사분기 연속 양(+의 기여를 나타낸 반면,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0.2%로 2사분기 연속 음(-)의 기여를 나타내었음
 - (민간수요) 민간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6%로 1차 속보치 0.1%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민간주택투자, 민간설비투자 등 민간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에 기인함
 -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5%로, 이는 화장품·PC·TV 등의 소비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민간주택투자 증가율은 1.6%로 5사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 민간설비투자 증가율은 1.8%로 2사분기 연속 증가하였는데, 공급 측 추계의 기초가 되는 총고정자본형성의 움직임을 보면 업무용 기계 지출 증가가 이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공적 수요) 공적 수요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7%로 1차 속보치 0.6%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정부최종소비지출(0.5%→0.7%)과 공적고정자본형성(0.8%→0.9%) 모두 1차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에 기인함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6%로 2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0.3%로 2사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 재화·서비스 수출의 감소는 여행(방일 외국인)의 국내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반면, 재화·서비스 수입의 증가는 장난감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와 동일하게 0.2%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계절조정 기준)

29) 내각부, 「2019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9. 12. 9.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30) 분기별 GDP의 1차 속보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2개월 후에 발표되며, 2차 속보는 1차 속보치 발표 이후 새롭게 이용 가능한 기초자료 등을 반영하여 1차 속보치 발표 후 약 1개월 뒤에 발표

<표 5> 201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기여도		3분기 연율환산 2차
					1차	2차	1차	2차	
국내총생산(GDP)	-0.6	0.3	0.6	0.5	0.1	0.4	-	-	1.8
국내수요	-0.5	0.7	0.3	0.8	0.2	0.6	(0.2)	(0.6)	2.5
민간수요	-0.5	0.8	0.3	0.5	0.1	0.6	(0.1)	(0.4)	2.4
민간최종소비지출	-0.2	0.2	0.2	0.6	0.4	0.5	(0.2)	(0.3)	2.2
민간주택투자	0.4	1.1	1.1	0.5	1.4	1.6	(0.0)	(0.0)	6.5
민간설비투자	-3.4	3.0	-0.2	0.9	0.9	1.8	(0.1)	(0.3)	7.3
민간재고증감	(0.3)	(-0.0)	(0.1)	(-0.1)	-	-	(-0.3)	(-0.2)	-
공적수요 ¹⁾	-0.3	0.3	0.1	1.6	0.6	0.7	(0.1)	(0.2)	2.8
정부최종소비지출	0.2	0.6	-0.3	1.6	0.5	0.7	(0.1)	(0.1)	2.7
공적고정자본형성 ¹⁾	-2.4	-0.7	2.0	1.6	0.8	0.9	(0.0)	(0.0)	3.6
공적재고증감 ¹⁾	(-0.0)	(-0.0)	(0.0)	(0.0)	-	-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4)	(0.4)	(-0.3)	-	-	(-0.2)	(-0.2)	-
재화·서비스 수출	-1.8	1.2	-2.1	0.5	-0.7	-0.6	(-0.1)	(-0.1)	-2.5
재화·서비스 수입	-1.3	3.8	-4.1	2.1	0.2	0.3	(0.0)	(-0.1)	1.3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공적수요는 Public Demand,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Public Investment, 공적 재고증감은 Change in Public Inventories를 의미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9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9. 12. 9.

<표 6> 연도별 실질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회계연도(Fiscal Year)				역년(Calendar Year)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국내총생산(GDP)	0.9	1.9	0.3	-	2.2	0.3	-
국내수요	0.1	1.5	0.4	(0.4)	1.6	0.3	(0.3)
민간수요	-0.0	1.8	0.2	(0.2)	2.0	0.1	(0.1)
민간최종소비지출	-0.0	1.1	0.1	(0.0)	1.3	-0.0	(-0.0)
민간주택투자	6.3	-1.4	-4.9	(-0.1)	1.7	-6.7	(-0.2)
민간설비투자	-0.4	4.3	1.7	(0.3)	4.0	2.1	(0.3)
민간재고증감	(-0.1)	(0.2)	-	(0.0)	(0.1)	-	(-0.0)
공적수요 ¹⁾	0.6	0.5	0.8	(0.2)	0.2	0.8	(0.2)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3	0.9	(0.2)	0.2	0.9	(0.2)
공적고정자본형성 ¹⁾	0.6	0.5	0.6	(0.0)	0.5	0.3	(0.0)
공적재고증감 ¹⁾	(-0.0)	(0.0)	-	(-0.0)	(0.0)	-	(0.0)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8)	(0.4)	-	(-0.1)	(0.6)	-	(0.0)
재화·서비스 수출	3.6	6.5	1.6	(0.3)	6.8	3.4	(0.6)
재화·서비스 수입	-0.9	3.9	2.2	(-0.4)	3.4	3.4	(-0.6)

주: 1. () 안은 국내총생산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공적수요는 Public Demand,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Public Investment, 공적 재고증감은 Change in Public Inventories를 의미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9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9. 12. 9.



독일

[예산·결산 등]

■ FY2020 예산안 연방의회 통과(2019. 11. 29.)³¹⁾

- 지난 6월 26일 연방정부는 3,599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³²⁾
- 하원은 11월 29일 정부안 대비 약 21억유로 증액된 3,620억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으로 통과시켰고, 국방, 유치원 증설, 대중교통 및 기후보호에 대한 투자를 발표함
 - 역대 독일 예산 최대 규모인 451억유로(GDP 대비 2%)의 국방예산을 편성했으며, 연방군의 해외 임무와 NATO 협약 이행을 위해 지출될 계획
 - 기후패키지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 철도티켓 판매세를 인하, 항공세 인상, 건물의 석유난방 시스템 교체 지원 등을 이행할 계획
 - 2020년 예산에서 인프라 및 사회 투자지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액된 약 429억유로를 편성하였으며, 도로 확장 및 유지·보수, 유치원 건립, 학교 디지털화 및 농촌지역 네트워크 지원이 포함됨

[기타]

■ 연방 재무부, 보조금 보고서(Subventionsbericht) 발표(2019. 11. 6.)³³⁾

- (배경) 동 보고서는 경제안정 및 성장 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로, 연방의 재정지원 및 조세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
- (내용) 재정지원 및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218억유로에서 2020년 314억유로로 증가, 이는 기후보호 2030 이행 목적으로 연방보조금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기인함
 - (조세지출) 연방세액공제는 2017년 156억유로에서 2020년 169억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며, 기업차량과세에 대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철도화물운송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삭감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재정지원) 기후보호 관련 환경정책에 전체 보조금 중 58%(84억유로)를 배정하였고, 이외에도 주택건설, 디지털화 및 미래 자동차 등에 우선순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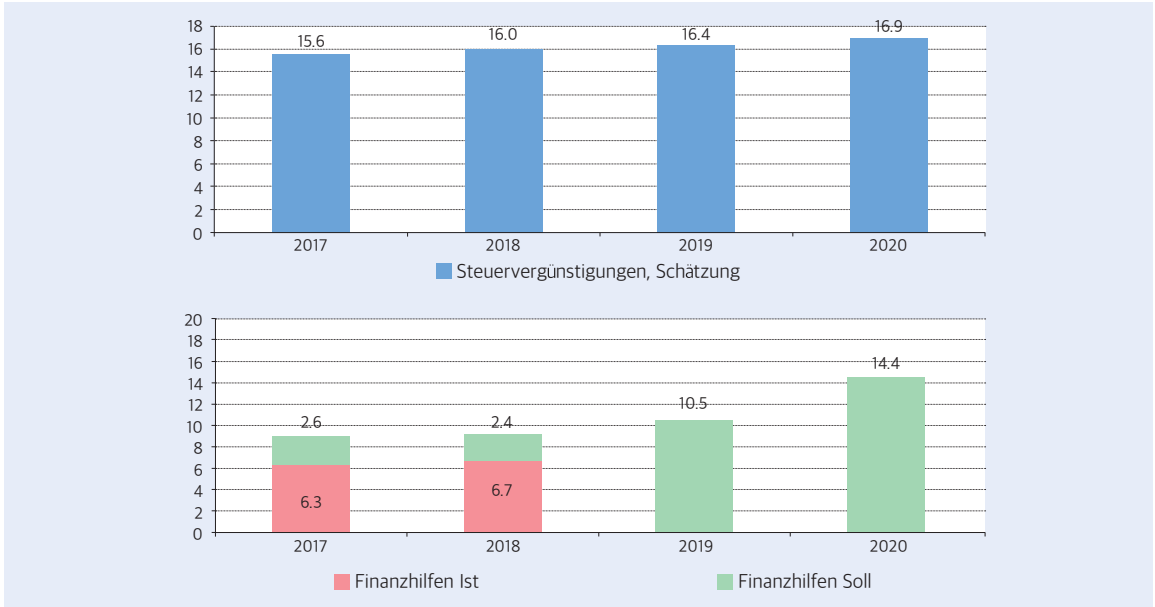
31) 연방 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 Bundeshaushalt, 2019. 11. 2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19/2019-11-26-scholz-bundestag-bundeshaushalt-2020-erste-rede/2019-11-26-scholz-bundestag-bundeshaushalt-erste-rede-2020.html>
Deutsche Welle, German parliament passes record budget, 2019. 11. 29. <https://www.dw.com/en/german-parliament-passes-record-budget/a-51463550>

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 제1호, 2019 참고

33) 연방재무부, Monatsbericht des BMF, 2019.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19/11/Inhalte/Kapitel-3-Analysen/3-2-subventionsbericht.html>

[그림 6] 연방보조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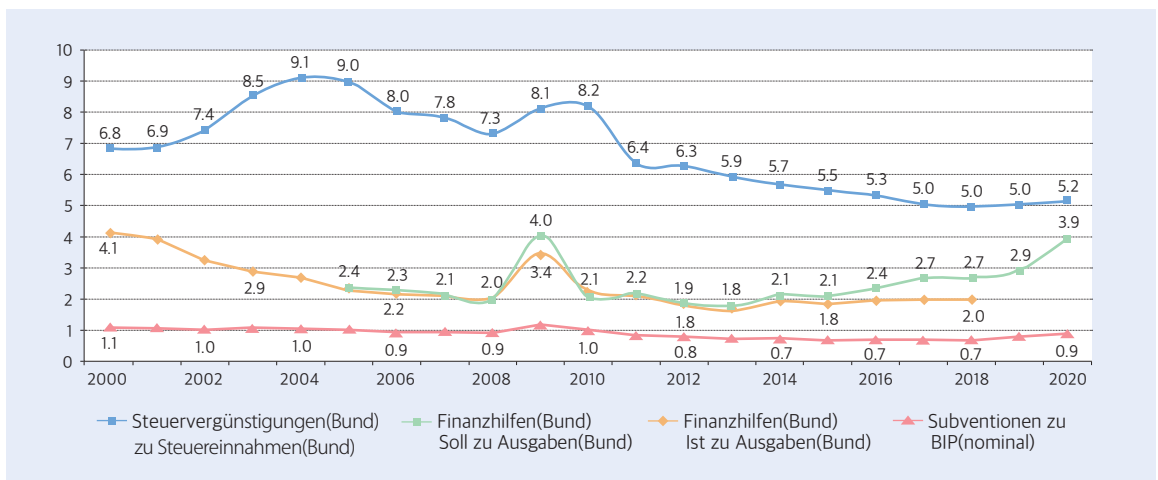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주: 위 그래프는 조세지출(Steuervergünstigungen), 아래 그래프는 재정지원(Finanzhilfen)을 의미(초록색은 목표치, 분홍색은 실적치로 구분)
출처: 연방재무부, Monatsbericht des BMF, 2019. 12.

[그림 7] 연방보조금 비율

(단위: %)



주: ■ 조세수입 대비 조세지출 비율, ■ 재정지출 대비 목표 재정지원 비율, ◆ 재정지출 대비 재정지원 비율(실적치), ▲ 명목 GDP 보조금 비율
출처: 재무부, Monatsbericht des BMF, 2019. 12.



■ 연방 노동청, 2019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2019. 11. 29.)³⁴⁾

- 독일의 실업률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동일한 4.8%를 기록
 - (실업자) 독일의 실업자수는 전월 대비 2만 4천명 감소(전년 대비 6천명 감소)한 218만명으로 기록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대상) 사회보장보험료 납입의무 근로자는 전월 대비 계절조정치로 3만명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
 - (노동수요) 11월 신규 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1천명 줄어든 73만 6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신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프랑스

[기타]

■ 에두아르 필리프(Édouard Philippe) 총리, 보편적 연금개혁에 관한 정부의 계획과 시행시기 발표 (2019. 12. 11.)³⁵⁾

- 올해 9월 12일 마크롱 대통령은 1유로는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한 레짐과 지

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보편적 연금 개혁을 발표³⁶⁾

- 다양한 형태의 예외적 레짐을 일반레짐으로 통합하여 레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경력 기간 동안 축적한 포인트에 따라 연금 금액을 산정하며, 남녀 간 불평등을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
- 12월 11일 총리는 보편성, 공정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보편적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반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고수
 - (보편성) 레짐별 직업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연금에 따른 직업 이동의 제약을 개선
 - (공정성) 분기 기준으로 일정 시간을 채워야 해당 분기에 대한 연금을 인정받는 체계에서 시간당 포인트 부여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비정기 혹은 시간제 근무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
 - 질병 혹은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연금 포인트를 부여
 - (책임성) 연금 운영의 감독을 강화하고, 퇴직 연령을 높여 세대 간 연대를 추구
 - 각 레짐별 운영 주체가 따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서 국회의 감독하에 사회적 파트너에게 위임

34) 연방노동청, Presse, 2019. 11. 29.

<https://www.arbeitsagentur.de/presse/2019-35-der-arbeitsmarkt-im-november-2019>

35) 프랑스 정부,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1317-presentation-du-systeme-universel-de-retraite-au-cese>

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9월 제1호, 201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4242>

하는 형태로 변경

- 기대 수명 증가를 감안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고 퇴직 연령을 늦추도록 함
 - 1975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고, 새 퇴직연금의 수급 체제는 1975년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 향후 5년 내 프랑스의 평균 퇴직 연령이 64세(현재는 62세)가 될 것으로 예상
- 연금개혁법안은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1월 22일에 장관 협의회에 제출하여 2월 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

■ 포용적 사회를 위한 장애인 지원 정책(2019. 12. 2)³⁷⁾

- (배경) 2019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의 교육, 고용, 권리, 접근성 측면의 진전을 돌아봄
- (정책내용) 성인장애수당 상향 조정,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장애아동 교육 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할 계획
 - 성인장애수당³⁸⁾을 2017년 월 810유로에서 2019년 월 900유로(약 119만원, 환율 1유로당 1,323원 기준)로 90유로 상향 조정

- 2019년 11월 1일부터 보충적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경, 의치, 보청기 등을 무료 혹은 낮은 기여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 2019년 1월부터 장애 아동 교육수당을 장애 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2018년 10월부터 장애 아동 육아보조금을 30% 증액
- 2019년 가을부터 학생과 가족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한 포괄적 공립학교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위한 학습을 장려하고, 2019년 1월부터 모든 일자리 훈련센터에 장애인 훈련을 돕는 인원을 배치
- (향후 계획) 2020년 2월 11일 장애인에 관한 대통령 주재 전국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22가지의 새로운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예정



[기타]

- 통계청, 2016년 4월~2018년 3월 가계부채 발표 (2019. 12. 5.)³⁹⁾
 - 2016년 4월~2018년 3월, 2년간 영국의 총 가계

37) 정부포털, <https://www.gouvernement.fr/handicap-des-avancees-majeures-pour-une-societe-inclusive>
<https://www.gouvernement.fr/en/disability-a-priority-for-the-five-year-term>
<https://www.gouvernement.fr/en-2020-de-nouvelles-ameliorations-pour-faciliter-le-quotidien-des-personnes-handicapees>

38) l'allocation adultes handicapés(AAH)

39) 통계청, "Household debt in Great Britain: April 2016 to March 2018," 2019. 12. 5.,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householddebtingreatbritain/april2016tomarch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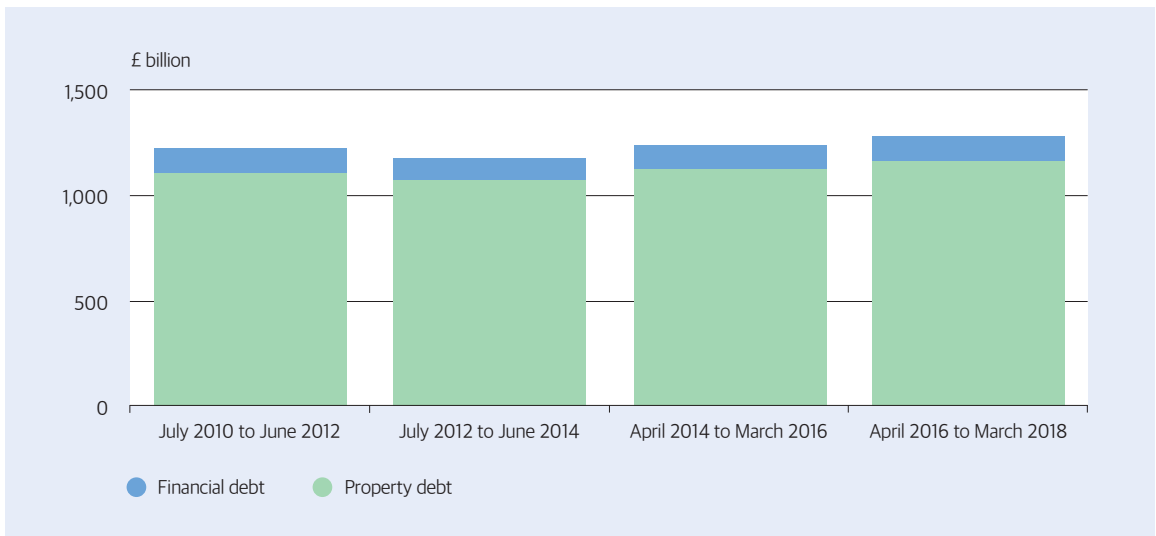
부채는 약 1조 2,800억파운드로 집계

- 가계부채 중 금융부채가 약 1,190억파운드(9%), 자산부채(모기지, 역모기지⁴⁰)가 약 1조 1,600억 파운드(91%)로 나타남([그림 1] 참고)
- 금융부채는 2014년 4월~2016년 3월 대비 약 11%(120억파운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할부구입(60억파운드) 및 학자금대출(70억파운드) 부채 증가에 기인
- 자산부채는 2014년 4월~2016년 3월 대비 약 3%(300억파운드) 증가하였는데, 자산부채 보유 가구 수와 규모 면에서 모두 증가를 보임

- 부유한 가구 상위 50%의 보유 부채가 총가계부채의 36%를 차지([그림 8] 참고)
 - 부의 정도가 중위에서 최상위의 가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부채의 비중이 더 크고, 중위 미만 가구들의 경우는 금융부채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 부유한 가구일수록 문제부채(problem debt)⁴¹ 보유 가구 비중이 감소
 - (하위 10분위) 15%, (20~50분위) 5%, (60~100분위) 2%

[그림 8] 가계부채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주: 가계부채는 인플레이션 조정 후 수치
 출처: 통계청, "Household debt in Great Britain: April 2016 to March 2018," 2019.12.5, Figure 1.

40) ER: Equity Release

41) 영국 통계청은 유동성 문제만 있거나, 지급능력 문제만 있거나, 유동성과 지급능력 문제가 모두 있는 가구의 경우 문제부채를 보유한 가구로 정의

[그림 9] 부(wealth)에 따른 가계부채별 비중(2016년 4월~2018년 3월)

(단위: %)



주: y축은 각 분위 가구에서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의미
출처: 통계청, "Household debt in Great Britain: April 2016 to March 2018," 2019. 12. 5., Figure 5.



캐나다

[예산·결산 등]

- FY2019-20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A)⁴²⁾ 하원 상정(2019. 12. 9.)⁴³⁾
 - FY2019-20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A)은 약 49억캐나다달러 규모

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48억 5천5백만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8,800만캐나다달러 편성

- 주요 의결지출의 변화 내용

- 퇴역군인(Veterans)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천만캐나다달러 지원을 포함하여 재향군인부에 8억 6천만캐나다달러 편성

42) FY2019-20 1차 추경

43) 캐나다 재무위원회, <https://www.pbo-dpb.gc.ca/en/blog/news/supplementary-estimates--budget-supplementaire--depenses--a-2019-2020>



- 외교부 5억 6천만캐나다달러 편성(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해결 지원 2억 7천만캐나다달러, 국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1억 8천만캐나다달러 포함)
- 360 전투지원 장갑차 구입비용 1억 8천만캐나다달러를 포함하여 국방부에 4억 3천만캐나다달러 편성
- 단체협약에 대한 보상 4억 7천만캐나다달러 등을 반영하여 재무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에 5억 7천만캐나다달러 편성
- 토착민 권리와 어업문제에 대한 화해 지원을 위해 2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는 등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에 3억 6천만캐나다달러 편성

발표(2019. 11. 29.)⁴⁴⁾

- FY2019-20 1, 2분기 재정적자는 약 58억캐나다달러로 FY2018-19 대비 약 70억캐나다달러 적자가 증가
 - (수입) FY2019-20 1, 2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1억캐나다달러(3.9%) 증가한 약 1,641억캐나다달러
 -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억캐나다달러(3.4%) 증가한 약 1,374억캐나다달러로, 주로 개인 및 법인소득세의 증가에 기인하며 연방의 대마초 소비세 2천만캐나다달러도 포함
 -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캐나다달러(2.1%) 증가한 약 113억캐나다달러, 기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억캐나다달러(6.1%) 증가한 약 147억캐나다달러를 나타냄
- (프로그램 지출) FY2019-20 1, 2분기 프로그램 지출은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부문

[기타]

■ 재무부, FY2019-20 1, 2분기(4-9월) Fiscal Monitor

<표 7> FY2019-20 추경예산안(A)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본세출예산안 (Main Estimates)	추경(A) (Supplementary)	합계 (Total)
일반예산 (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25.6	4.86	130.46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74.0	0.09	174.09
	합계(Total Budgetary)	299.6	4.95	304.55
투융자예산 (Non-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0.1	-	0.1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2.1	-	2.1
	합계(Total Non-Budgetary)	2.2	-	2.2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A), 2019. 12. 9.

44)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fiscmon-revfin/2019/2019-09-eng.asp>

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24억캐나다달러 (8.6%) 증가한 약 1,569억캐나다달러로 나타남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10.3%, 12.1% 증가

- (이자지출) 전년 동기 대비 약 7억캐나다달러 (5.7%) 증가한 약 130억캐나다달러로, 실질 이자율 채권(Real Return Bonds)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및 평균 실효이자율(average effective interest rate) 상승 반영에 기인

<표 8> 2019년 4~9월 Fiscal Monitor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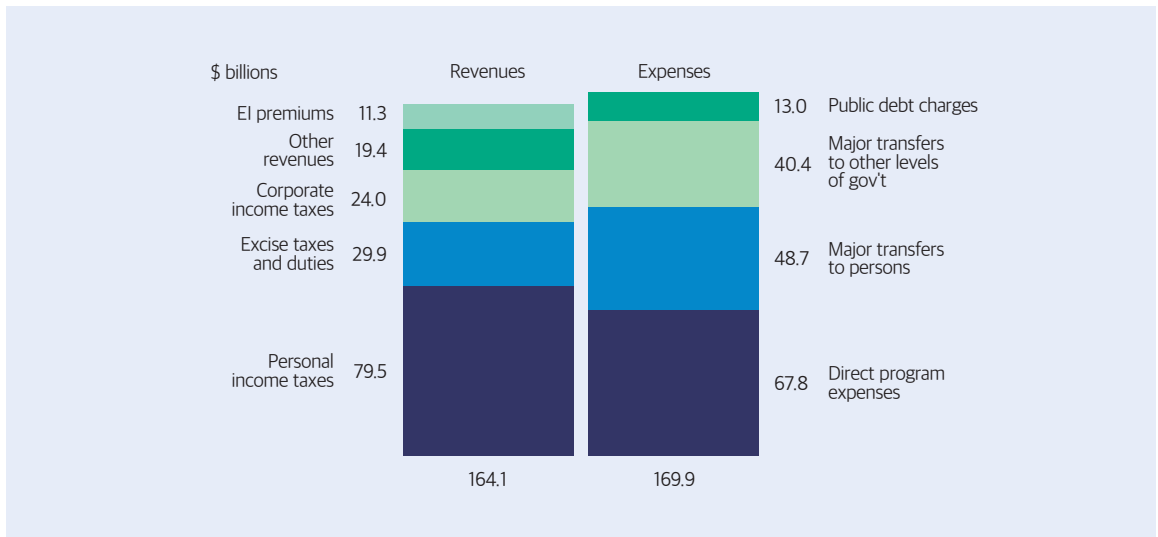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2018~2019(4~9월)	2019~2020(4~9월)	변화
수입(Total revenues)	157,957	164,067	3.9
지출(Total expenses)	156,752	169,868	8.4
프로그램지출(Program expenses)	144,479	156,892	8.6
이자지출(Public debt charges)	12,273	12,976	5.7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1,205	-5,801	-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September 2019, Table 1, 2, 3, 4 일부 발췌, 2019. 11. 29.

[그림 10] 수입 및 지출 구성(2019년 4~9월)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September 2019, 2019. 11. 29.



■ 재무부, 소득세법 개정⁴⁵⁾을 통해 중산층 세금감면에 대해 발표(2019. 12. 11.)⁴⁶⁾

- 2023년까지 1인당 기본공제액(Basic Personal Amount: BPA)을 1만 5천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을 확대하고 캐나다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자 함
 - 2020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약 2천만명 캐나다인의 세금이 삭감됨
 - 2023년 세금감면액은 1인당(single individuals) 매년 약 300캐나다달러, 1가구(한부모가정을 포함)당 약 600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10만명의 캐나다인이 더 이상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Common-Law Partner)의 부양가족공제액(Eligible Dependant Credit)을 2023년까지 1만 5천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발표



호주

[기타]

■ 호주 의회예산처,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19. 12. 27.)⁴⁷⁾

※ 의회예산처는 매년 일반 정부 부문,⁴⁸⁾ 전체 정부 수준⁴⁹⁾의 국가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

- (수지) 호주 전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2018~2019년 200억호주달러(GDP 대비 1.1%), 2019~2020년 452억호주달러(GDP 대비 2.0%) 흑자를 달성할 전망
 - 2018~2019년 전망과 비교해 국가 순운영수지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장해보험제도의 예상보다 작은 지출과 공공 채무 이자 지출 감소 등에 따른 연방 정부 비용 하향 조정에 주로 기인
 - 연방 정부 비용은 2018~2019년 GDP 대비 25.1%에서 2022~2023년 24.6%로 하락하는 반면 수입은 약 25.6%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주 정부 비용은 동 기간 14.6%에서 13.7%로 하락하고 수입도 14.7%에서 14.2%로 하락할 전망
- (순자본투자) 인프라 투자⁵⁰⁾는 2019~2020년

45)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drlreg-apl/2019/nwmm-amvm-1219-eng.asp>

46)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n19/19-104-eng.asp>

캐나다 재무부, <https://www.fin.gc.ca/n19/19-105-eng.asp>

47) 호주 의회예산처, National fiscal outlook: As at 2019-20 budgets, 2019. 12. 27.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Publications/Research_reports/National_fiscal_outlook

48) 공공금융기업, 공공비금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49) 연방정부, 주·준주정부, 지방정부

50) 본 보고서는 순자본투자, 비금융자산 순취득과 혼용 표기

375억호주달러로 정점에 도달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8~2019년 전망에 비해 2018~2019년에서 2021~2022년 중 주·지방 정부가 대중교통, 도로, 보건, 교육 투자에 힘입어 168억호주달러 상향되는 등 총 209억호주달러가 상향됨

- (순채무) 연방 정부의 GDP 대비 순채무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주·지방 정부 순 채무는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에 이르러 2019~2020년 4,431억호주달러(GDP 대비 22.1%)까지 증가할 전망

- 2021~2022년 말 연방 정부 순채무는 낮아진 금리에 따른 국채 평가액 상승으로 인해 지난 전망 대비 140억호주달러 상향 조정된 3,332억호주달러로 예상됨

- 2021~2022년 말 주·지방 정부 순채무는 회계 기준변경과 빅토리아주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액 증가로 인해 지난 전망 대비 321억호주달러 상향된 1,442억호주달러로 예상됨

■ 호주 재정부, 퀸즐랜드 내륙 철도 협정 체결 발표 (2019. 11. 29.)⁵¹⁾

- 연방 정부는 내륙 철도(Inland Rail)* 프로젝트에 93억호주달러 투입을 결정하고, 하위 사업 13개 중 5개가 위치한 퀸즐랜드주도 2억호주달러를 투입하기로 발표

* 퀸즐랜드주~뉴사우스웨일즈주~빅토리아주를 연결하는 철로의 신설, 개선 및 복선화 사업

- 정부는 도로보다 운송료가 저렴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은 철도 화물망을 신설, 개선하여 국가 경제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퀸즐랜드

[그림 11] 국가 순운영수지, 순자본투자, 재정수지, 순채무

(단위: 십억호주달러)



출처: 호주 의회예산처, National fiscal outlook: As at 2019-20 budgets, 2019. 12. 27.

51) 호주 재정부, Ground-breaking Inland Rail agreement lays the track for Queensland's future, 2019. 12. 29.

<https://www.financeminister.gov.au/media-release/2019/11/29/ground-breaking-inland-rail-agreement-lays-track-queenslands-future>



주의 장기적인 활력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
 - 내륙철도 투자액 1호주달러당 2.62호주달러
 의 국가 경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퀸즐랜드주에 7천개의 일자리와 70억호주달
 러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호주 통계청, 2019년 3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19. 12. 3.)⁵²⁾

- 호주 일반 정부 부문, 전체 정부 수준의 2019년 3분기(September quarter) 세입(taxation revenue)은 전분기 대비 -16.5% 감소한 1,284억 7,7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전분기 대비 14.7% 감소한 1,637억 5,100만호주달러를 기록
- 총비용(total expenses)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한 1,772억 2,1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134억 6,900만호주달러

적자, 다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순차입(net borrowing)은 194억 5,200만호주달러를 기록

■ 호주 통계청, 2019년 3분기 국민계정 발표(2019. 12. 4.)⁵³⁾

- 2019년 3분기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
 - 가계최종소비지출은 보건(0.9%, 이하 전분기 대비), 여가 및 문화(0.5%) 등이 증가한 반면 호텔, 카페 및 레스토랑(-0.9%) 등이 감소해 0.1% 증가하였고, 정부최종소비지출은 0.9% 증가
 - 민간 투자는 기계 및 장비(-4.2%) 등 감소에 따라 0.7% 감소한 반면, 공공투자는 주·지방 공기업(7.6%) 등에 힘입어 1.9% 증가
 - 수출은 비 통화적금(non-monetary gold), 여행 서비스 등의 증가가 석탄, 농산물 등 감소로

<표 9> 2019년 3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부문, 전 정부 수준)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전분기 대비
세입(Taxation revenue)	153,819	128,477	-16.5
총수입(Total revenue)	191,866	163,751	-14.7
총비용(Total expenses)	175,640	177,221	0.9
GFS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16,226	-13,469	-
GFS 순용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1,210	-19,452	-

출처: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Sep 2019, 2019. 12. 3.

52)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Sep 2019, 2019.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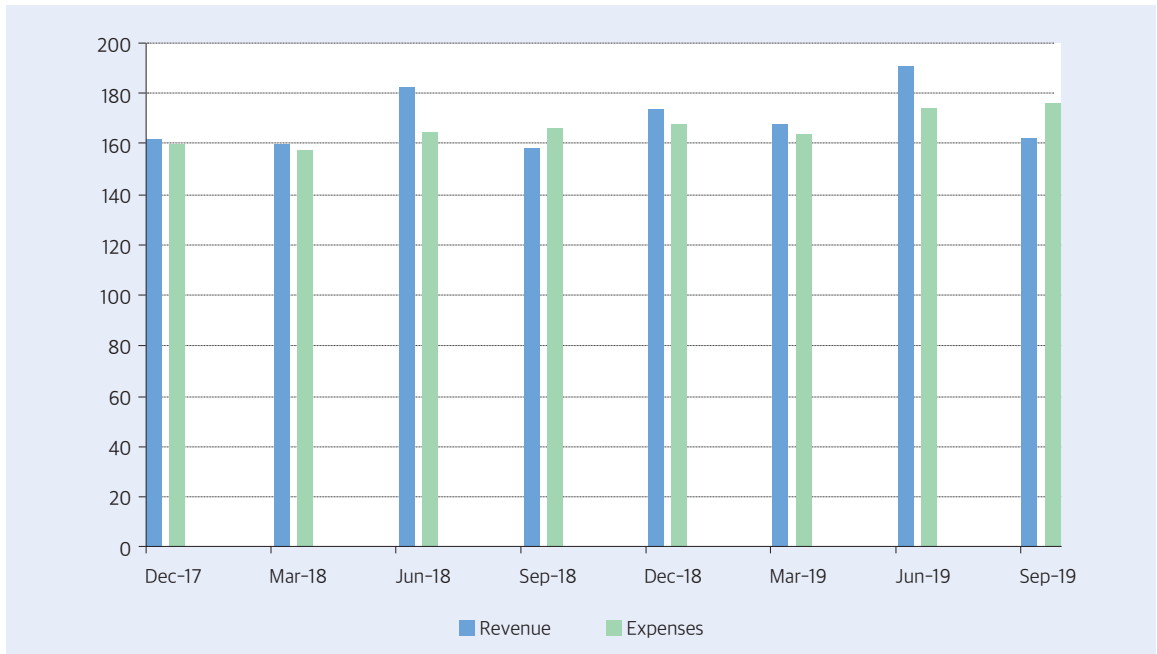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mf/5519.0.55.001>

53)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Sep 2019, 2019. 12. 4.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5206.0Main%20Features3Sep%202019>

[그림 12] 2019년 3분기 수입 및 비용(일반정부 부문, 전 정부 수준)

(단위: 백만호주달러)



출처: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Sep 2019, 2019. 12. 3.

<표 10> 호주의 2019년 3분기 국민계정

(단위: % 변화,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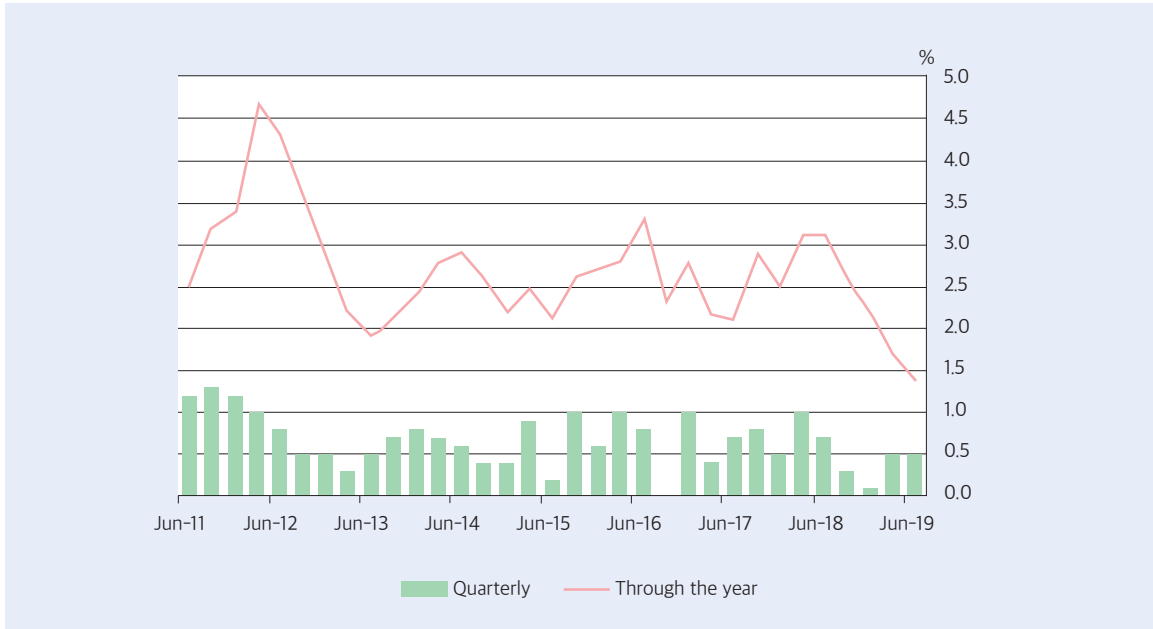
구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3	2.4
가계(Households)	0.1	1.2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0.9	6.0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2	-3.8
민간(Private)	-0.7	na
공공(Public)	1.9	0.2
재고 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3	0.6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7	3.3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0.2	-1.5
통계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4	1.7

출처: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Sep 2019, 2019. 12. 4.



[그림 13] 호주 경제성장률 추이(계절조정)

(단위: %)



출처: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Sep 2019, 2019. 9. 4.

일부 상쇄돼 0.4% 증가했고, 수입은 운수 서비스(-1.6%) 등 감소에 따라 0.2% 감소

추가 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호주 재무부, 호주 기업 성장 기금 조성 발표 (2019.12.5)⁵⁴⁾

- 정부는 특정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방식 조달보다 자기자본 방식 조달이 더 효율적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강한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

- 호주 중소기업은 300만개 이상으로 약 700만 명의 호주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받거나 담보 설정 후

- 다른 금융 기관들⁵⁵⁾과 함께 정부는 1억호주달러를 투입해 5억 4천만호주달러 규모의 호주 기업

54) 호주 재무부, Introducing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Australian Business Growth Fund, 2019. 12. 5.
<http://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introducing-legislation-establish-australian-business>
<https://www.treasury.gov.au/consultation/c2019-29670>(입법예고 법안설명자료)
 호주 의회, Australian Business Growth Fund Bill 2019, 2019. 12. 5.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ld=r6463

55) ANZ, CBA, NAB, and Westpac은 각 1억호주달러, HSBC, Macquarie Group은 각 2천만호주달러 투입

성장 기금(Australian Business Growth Fund)
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향후 기금 규모를
10억호주달러까지 확대하기로 계획

- 일정 자격을 갖춘 호주 소재 중소기업은 10~40%의 장기지분자본투자(long-term equity capital investments)를 통해 500만~1,500만호주달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제도는 영국, 캐나다 등의 기업 성장 기금 사례를 따를 것으로 보임

재정포럼

2020년 1월호 통권 제283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1월 15일 발행 / 제24권 제1호(통권 제28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